

세법연구 10-03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김진 · 송은주 · 정희선

2010.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	9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및 세수 현황	9
가.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9
나. 세수 현황	12
2. 가업상속 현황	13
3. 가업상속 관련 세제	14
가. 가업상속공제	15
나. 영농상속공제	23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27
라. 연부연납제도	32
마.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적용 배제	35
III. 주요국의 가업상속 관련 세제	37
1. 미국	37
가. 개관	37
나. 가업상속공제(QFOBI deduction)	40
다.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	49
라. 소유집중 기업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	57
2. 독일	60
가. 개관	60
나. 상속세 개혁법(2009. 1. 1.) 이전	61

다. 상속세 개혁법(2009. 1. 1.) 이후	62
라. 경제성장 촉진법(2010. 1. 1.) 이후	70
3. 영국	73
가. 상속세제 개관	73
나.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	76
다.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	81
4. 일본	83
가. 상속세제 개관	83
나. 비상장 주식 등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납세유예	87
다. 농지의 상속에 대한 납세유예	94
라. 농지의 증여에 대한 납세유예	97
마. 소규모 택지 등의 과세특례	99
IV.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03
1. 가업상속제도의 국제비교	103
가. 과세특례제도 개관	103
나. 공제제도	105
다. 평가특례제도	113
라. 납부특례제도	114
2.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15
가. 가업상속제도의 기본방향	115
나. 주요 항목별 개선방향	117
V. 결 론	125
참고문헌	128

표 목차

〈표 II-1〉 각종 상속공제	10
〈표 II-2〉 각종 증여재산공제	11
〈표 II-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1
〈표 II-4〉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실적	12
〈표 II-5〉 2008년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현황	14
〈표 II-6〉 가업상속세제 개요	15
〈표 II-7〉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연혁	16
〈표 II-8〉 가업상속 공제 요건	17
〈표 II-9〉 영농상속공제금액 연혁	24
〈표 II-10〉 연부연납 기간	33
〈표 II-11〉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율	36
〈표 III-1〉 유산세 및 증여세와 세대생략이전세 기본공제금액 및 최고세율 추이(미국)	38
〈표 III-2〉 유산세 및 증여세 통합세액공제(미국)	39
〈표 III-3〉 유산세 기본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미국)	46
〈표 III-4〉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적용비율(미국)	48
〈표 III-5〉 독일의 사업자산공제	61
〈표 III-6〉 상속세개혁법상 주요 개정사항: 인적공제	65
〈표 III-7〉 상속세개혁법상 주요 개정사항: 상속세율	65
〈표 III-8〉 영국의 상속세 면세점 금액	73
〈표 III-9〉 영국의 사업자산 및 농업자산 공제제도 개요	75
〈표 III-10〉 사업자산공제의 자산유형별 감면율	79
〈표 III-11〉 기초공제액 추이	84

〈표 Ⅲ-1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85
〈표 Ⅲ-13〉 사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례조치.....	87
〈표 Ⅲ-14〉 원활화법에서의 중소기업 범위.....	88
〈표 Ⅲ-15〉 소규모 택지 등의 과세특례 개정 추이.....	102
〈표 Ⅳ-1〉 가업상속시 과세특례제도의 종류.....	104
〈표 Ⅳ-2〉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의 범위.....	106
〈표 Ⅳ-3〉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107
〈표 Ⅳ-4〉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혜택.....	108
〈표 Ⅳ-5〉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111
〈표 Ⅳ-6〉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 관리 요건.....	113
〈표 Ⅳ-7〉 가업상속시 평가특례제도.....	114
〈표 Ⅳ-8〉 가업상속시 납부특례제도.....	115

I. 서론

-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 과거에는 가업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컸으나 최근에 와서는 가업상속의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음.
 - 즉, 가업상속을 통해 고유의 기술비법 보전이 가능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유지로 인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업상속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규모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따라서 가업상속 조세지원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소유주가 경영권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시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마련된 것은 1996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도입한 때부터임.
 - 도입 당시에는 지원 대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이후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조사에서도 가업상속의 장애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금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이 2007년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조정한데 이어 우리나라도 2009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금액 및 한도금액을 대폭 확대하였고 독일도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였음.
 - 일본과 독일 모두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고용 유지라는 사후관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이는 가업상속이 단순히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상속인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확산을 통한 경제기반의 확충과 일자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시각을 갖고 현 시점에서의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세제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가업상속세제를 조사하고 제Ⅳ장에서는 각 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음.

II.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및 세수 현황

가.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이고, 증여세란 생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임.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액 중 하나를 차감하고 그 외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함.
 - 각종 상속재산공제 금액은 <표 II-1>과 같음.

〈표 II-1〉 각종 상속공제

	항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Max(가업상속재산×40%*, 2억원**) *한도 있음 ** 가업상속재산가액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80/1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 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발생한 재해	당해 손실가액	한도없음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	주택가액의 40%	5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9.

□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의제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 불산입재산과 채무 등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한 후, 증여재산가액에 10년 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인적공제 등 각종 증여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 증여세 산출시 차감하는 각종 공제액은 〈표 II-2〉와 같음.

〈표 II-2〉 각종 증여재산공제

	공제내용	비고
배우자공제	6억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의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9.

- 1996. 12. 31. 이전까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각각의 과세구간과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97. 1. 1. 이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구간과 세율을 단일화 하였고, 2000.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과세구간 및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II-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996. 12. 31. 이전		1997. 1. 1. ~ 1999. 12. 31.		2000. 1. 1. 이후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상속세〉					
5천만원 이하	10%				
2억 5천만원 이하	2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5억 5천만원 이하	3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 5천만원 초과	4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0%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 세액의 납부에 있어서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이 허용됨.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되고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허용됨.
 - 기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허용됨.

-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됨.

나. 세수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세수 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비중이 1.0%로 상속세 비중 0.8%보다 세수 비중이 높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가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2%에서 2007년 1.9%에 이르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표 II-4〉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실적

(단위: 억원, %)

		국세 계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2003년	금액	1,070,486	13,150	4,853	8,297
	구성비	100.0	1.2	0.5	0.8
2004년	금액	1,102,170	17,082	5,883	11,199
	구성비	100.0	1.5	0.5	1.0
2005년	금액	1,204,237	18,727	7,019	11,708
	구성비	100.0	1.6	0.6	1.0
2006년	금액	1,302,608	23,892	8,676	15,216
	구성비	100.0	1.8	0.7	1.2
2007년	금액	1,530,627	28,418	10,589	17,829
	구성비	100.0	1.9	0.7	1.2
2008년	금액	1,575,285	27,760	11,817	15,943
	구성비	100.0	1.8	0.8	1.0

자료: 국세청, 『2009 국세통계연보조세개요』, 2009.

2. 가업상속 현황

- 200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974천개, 종사자 수는 11,149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8.4%를 차지하고 있음¹⁾.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기업의 고유한 기술의 보전을 통한 경제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 외에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도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 및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2006년 1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영자의 유형은 창업자가 80.1%, 창업 후세대가 12.2%, 전문경영인이 4.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²⁾.
 - 동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연령이 60대에 이르면 경영의욕이 현격히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51.3세인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점에 상당 수의 창업자들이 은퇴를 희망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조사대상 기업 중 가업승계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1.2%이고 가업승계 없이 폐업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체로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창업 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경영상태도 좋은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07년에 중소기업연구원이 업령 30년 이상인 중소기업 및 업령 25년 이상이고 경영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1,87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로 지적하였음.

1) 중소기업청, 『2009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2)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건수는 각각 51건, 98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 총 건수 중 과세미달 건수가 각각 10건, 20건이고 과세건수는 각각 41건, 78건임.
 - 과세건수만을 봤을 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건당 공제금액은 7,800만원 정도이고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건당 1억 6,300만원 정도임.
 - 통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건수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보다 영농상속공제 건수가 더 많고 건당 공제금액 규모도 영농상속공제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II-5〉 2008년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과세		과세미달		과세		과세미달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41	3,217	10	831	78	12,778	20	3,36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3. 가업상속 관련 세제

-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가업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영농상속공제제도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영농상속공제제도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비율 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제도는 증여시점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증여자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과세하는 것이므로 사망시점까지 납세가 유예되는 제도임.
 - 그 외에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일정기간동안 분납을 허용하는 연부연납제도와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제도가 있음.

〈표 II-6〉 기업상속세제 개요

구분	근거조항	지원내용
기업상속공제	상증법 §18②	- 공제액: Max(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60억원~100억원 한도), 2억원) - 대상: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
영농상속공제	상증법 §18②	- 공제액: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 대상: 피상속인이 농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2년간 영농에 종사한 경우
기업승계주식 증여세 저율 과세	조특법 §30의6	- 특례내용: 기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과세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기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주식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경우
연부연납제도	상증법 §71	- 연납기간: ① 상속재산가액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 3년 거치 후 12년간 분납 ② 상속재산가액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미만: 2년 거치 후 5년간 분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제외	조특법 §101	-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 배제 (2010. 12. 31. 이전의 상속분까지 한시 적용)

가. 기업상속공제

1) 기업상속공제 도입 배경 및 연혁

기업상속공제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임.

1996년까지는 상속세법상의 상속 공제시 기초공제 1억원에 추가하여 1억원을 한도로

물적공제를 허용하는 수준이었음.

- 당시 물적공제는 주택,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장을 대상으로 하며,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의 추가공제가 허용되었음.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7년 처음 도입되었음.

- 도입 당시에는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액 2억원에 추가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에 관계없이 1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음.
- 이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2008년도에는 한도액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2009년부터는 다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금액은 상속재산액의 20%에서 40%로, 공제한도액도 30억원에서 60~1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조세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II-7〉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공제금액	한도액
1997. 1. 1. ~ 1998. 12. 31.	5년 이상	1억원	-
1999. 1. 1. ~ 2007. 12. 31.	5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 1. 1. ~ 2008. 12. 31.	15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2억 미달은 전액	한도 30억원
2009. 1. 1. 이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속재산가액의 40%, 2억 미달은 전액	6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2) 적용 요건

가) 피상속인의 요건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①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과 ②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2009년까지는 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장수기업의 원활한 기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하였음.

–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① 영업기간 중 60% 이상 재직, 또는 ②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으로 개정하였고 2010년 2월 18일 이후 사망으로 인한 기업상속부터 적용함.

〈표 II-8〉 기업상속 공제 요건

사망일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2008. 1. 1. 이후	15년 이상	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
2009. 1. 1. 이후	10년 이상	
2010. 2. 18. 이후	상동	① 또는 ② ① 영업기간 중 6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자료: 국세청 「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보도참고자료, 2010. 2. 19.

나) 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함³⁾.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은 2008. 1. 1.~2008. 12. 31.

- 또한 상속인은 ③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④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에 있어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⁴⁾.
 - 중도에 퇴사한 경우, 당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⁵⁾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⁶⁾.
 - 다만, 중소기업의 업종 기준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⁷⁾을 제외하고, 음식점업을 포함하되 과세유흥장소⁸⁾는 제외함⁹⁾.

기간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였으나 2009. 1. 1. 이후부터는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함.

4) 기본통칙 18-15...1 제2항

5)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준 이내이고 ②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함.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7)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란 양축, 영어 및 영립업임.

-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¹⁰⁾.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¹¹⁾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이면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임¹²⁾.

-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¹³⁾.
 - 개인으로서의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임.
 - 법인으로서의 가업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함.

4) 가업상속 공제금액

- 가업상속 공제금액은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 금액과 ② 2억원 중 큰 금액임.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

-
- 8)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11)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의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함.
 - 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②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소속의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주주 등 1인과 상기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⑤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⑥ 주주 등 1인과 상기 ① 내지 ⑤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⑦ 주주 등 1인과 상기 ① 내지 ⑥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⑧ 주주 등 1인과 상기 ① 내지 ⑦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위기간에 따라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도금액도 커짐.

– 공제한도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8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100억원임.

-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동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은 2009. 1. 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함.

□ 2008. 1. 1.~2008. 12. 31. 기간에 상속개시된 경우,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이며,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함.

-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2억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공제함.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가업 영위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함.

-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 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¹⁴⁾.

5) 가업상속공제의 신청 및 사후 관리

가) 신청 절차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명세서 및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¹⁵⁾.

14) 기본통칙 18-15...1 제3항 및 제4항

- 기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

나) 사후 관리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업상속공제의 적정여부와 법에서 정하는 사후 관리 사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¹⁶⁾.
- 추정 사유란 ① 해당 기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임.
 - 기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용자산가액에서 기업용자산 중 처분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①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③ 해당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임.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③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임.
 -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추정 사유에서 제외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내지 제11항

하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음¹⁷⁾.
- 기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였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기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 또는 시설의 개체 및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기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기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기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이 전된 기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 상속세를 추정하지 않음.
- 해당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기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기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 등으로 기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임.
 - 기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기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었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
 -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함으로써 그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나. 영농상속공제

1) 영농상속공제의 도입 배경 및 연혁

-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함)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 농지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임¹⁸⁾.
 - 이러한 영농상속에 대하여 상속세 산출시 2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함.

- 영농상속공제 금액은 도입 당시 영농(양축 및 영어 포함)상속인은 1억원, 임업상속인은 2억원이었으나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1997.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영농·영어상속인에 대해서도 임업 상속인과 동일한 2억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기 시작되었음.
 - 1997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모든 영농상속에 대하여 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영농규모에 관계 없이 공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매우 적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 1. 1. 이후 상속분부터는 영농상속가액에 한해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최근 기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액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영농상속공제의 공제액 및 한도액은 1999. 1. 1.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표 II-9〉 영농상속공제금액 연혁

적용기간	대상	공제액
~ 1996. 12. 30.	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	1억원
	임업상속인	2억원
1997. 1. 1.~1998. 12. 31.	영농, 양축, 영어, 임업 상속인	2억원
1999. 1. 1. ~	영농, 양축, 영어, 임업 상속인	영농상속가액 (한도 2억원)

2) 적용 요건

가) 피상속인의 요건

□ 피상속인은 ① 농지 등의 인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②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즉,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영림에 종사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임¹⁹⁾.

– 이때 거주사실은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실제 거주하였던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해당지역의 주민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함.

–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는 것을 의미함.

– 당해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 그 동거가족이 경작한 때에도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농경에 종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나) 상속인의 요건

- 영농상속인은 ① 18세 이상이고 ② 2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③ 농지 등의 소재지 및 인접지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든 갖춘 자이거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이어야 함.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3) 대상 자산

-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①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도 포함), ② 초지, ③ 산림지, ④ 어선, ⑤ 어업권임.
 - 산림지는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의미함.

4) 공제액

-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함.
 - 단, 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함.

5) 사후 관리

- 영농상속으로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

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정당한 사유란 ①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거나 매수된 경우,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²⁰⁾.
 -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²¹⁾.
 -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가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상속개시일부터 통산하여 5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만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액을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5) 가업상속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농업 및 임업, 어업 등은 대상 업종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농업 및 임업, 어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는 해당되나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는 제외됨.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 따라서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함.
- 그러나 피상속인이 영농 이외의 사업과 영농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각각의 공제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²²⁾.

다.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1) 도입 목적 및 연혁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 12. 31.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기업 승계의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에 정산하는 방식임.

2) 적용 요건

가) 수증자

-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증자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즉, 수증자는 ①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② 해당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하고 ③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④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함²³⁾.

22) 재재산 46012-90, 2001. 3. 29.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

나) 증여자

- 증여자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업²⁴⁾’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② 60세 이상의 부모²⁵⁾이어야 함.

3) 대상 자산

- 대상 자산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10. 12. 31.까지 증여받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함.

4) 과세특례 내용

가) 주식 등의 증여시점의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²⁶⁾ 및 증여세율²⁷⁾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승계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즉,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²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²⁹⁾는 규정³⁰⁾이 있으나 가업승

24) 가업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부분 참조

25)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함.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표 II-2> 참조.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표 II-3> 참조

28)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29)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계주식의 증여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³¹⁾ 및 연부연납³²⁾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신고세액공제란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연부연납이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임.

나) 증여 후 상속에 따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업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함³³⁾.
- 증여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기업승계 주식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하되 공제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다) 증여 후 상장 등에 따른 과세특례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³⁴⁾.

- 증여이익이란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의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타 이익의 증여를 말함.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으로 인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함.
 - 합병에 의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함.
 - 기타 이익의 증여라고 하는 것은 ①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통상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의미함.

5) 사후 관리

가) 추정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7항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³⁵⁾.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 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란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말함.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란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³⁶⁾,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³⁷⁾,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추징이 배제됨.

- 정당한 사유³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증자가 사망하여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임.

나) 이자상당액의 부과

□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전술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5) 시행령 제27조의 6 제2항, 제5항 및 제6항

36)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7)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8) 시행령 제27조의 6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4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함³⁹⁾.

다) 중복적용 배제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⁴⁰⁾는 적용하지 않음.

라. 연부연납제도

- 연부연납제이란 특정 요건을 만족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임.
 -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이유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1) 연부연납 신청 요건

-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짐.
 - 신청 요건으로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임.
 - 종전에는 연부연납신청기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2007. 12. 31. 법 개정으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39) 시행령 제27조의 6 제4항

4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 과세하고 부모의 사망시에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 제공한 담보재산 가액은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2)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의 기간은 대상 자산이 기업상속재산인 경우와 그 외의 재산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기업상속재산인 경우 ① 상속재산⁴¹⁾ 중 기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고 ②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임.

○ 기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임.

〈표 II-10〉 연부연납 기간

		기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연부연납 기간	
			2007.12.31. 이전	2008.1.1. 이후
상속세	기업상속재산	50% 미만	허가받은 날부터 5년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50% 이상 ¹⁾	허가받은 날부터 15년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3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증여세			허가받은 날부터 3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주: 1) 기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2000. 12. 31. 이전 신청분은 7년, 2001. 1. 1. ~ 2003. 12. 31. 신청분은 10년임.

3)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각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함.

4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금액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1’로 나누어 산출함.
-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총상속세 납부세액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begin{aligned} \text{연부연납금액} &= \text{연부연납대상금액} \div (\text{연부연납기간} + 1) \\ \text{연부연납대상금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text{가업상속재산가액} \div \text{총상속재산가액}) \end{aligned}$$

4) 연부연납의 취소 및 변경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① 해당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몰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이어야 함)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이러한 경우 연부연간 금액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함.

마.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제도란 최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세 과표 계산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20~30%(중소기업은 10~15%) 할증하여 평가하는 제도임⁴²⁾.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할증평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⁴³⁾.
 -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하여 2004. 12. 31. 법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2005. 1. 1.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됨.
 - 적용 제외 규정 신설 당시에는 2006. 12. 31.까지의 상속 및 증여분에 대해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2006. 12. 31.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2009. 12. 31.로 연장하였고 2009. 12. 31. 또 한번의 법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2010. 12. 31.까지 연장함으로써 2005. 1. 1.부터 현재까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적용배제하고 있음.

- 할증평가 비율은 1999. 12. 31. 이전까지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10%이었으나 2000. 1. 1. 이후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30%로 할증비율이 높아졌음.
 - 또한 2003. 1. 1. 이후부터는 할증비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은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10%, 지분율 50% 초과하는 경우 15%로 할증비율은 낮추었음.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표 II-11〉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율

(단위: %)

	1992~1999년	2000~2002년	2003년 ~ 현재	
			중소기업	대기업
최대주주지분율 50% 이하	10	20	10	20
최대주주지분율 50% 초과	10	30	15	30

Ⅲ. 주요국의 기업상속 관련 세제

1. 미국

가. 개관

1) 상속세제도 개관

- 미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T)로 구성되어 있음.
 - 유산세라 함은 개인이 사망으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임.
 - 미국에서 유산세는 1916년 개인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바 있음.
 - 증여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개인이 유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생전증여 또는 세대생략 이전 방식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할 목적으로 각각 1932년 및 1976년에 도입되었음.
 - 증여세는 개인이 생전에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임.
 - 세대생략이전세는 생전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임.

-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2001년 ‘경제성장 및 세금감면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에 따라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2010년에는 잠정적으로 전면 폐지될 계획에 있음.

-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점진적인 폐지는 기본공제금액(applicable exclusion amount)의 인상 및 최고세율의 인하를 통해 진행되었음.
 -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기본공제 금액 및 최고세율은 동일 과세연도의 유산세 세율과 동일함.
 - 한편, 증여세의 경우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고 있으나 최고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수준⁴⁴⁾으로 인하되었음.

〈표 Ⅲ-1〉 유산세 및 증여세와 세대생략이전세 기본공제금액 및 최고세율 추이(미국)
(단위: USD)

과세연도	유산세 및 증여세			세대생략이전세	
	기본공제		최고세율(%) (유산세/증여세)	면세금액	최고세율(%)
	유산세	증여세			
2001	675,000	675,000	55/55	675,000	55
2002	1,000,000	1,000,000	50/50	1,000,000	50
2003	1,000,000	1,000,000	49/49	1,000,000	49
2004	1,500,000	1,000,000	48/48	1,500,000	48
2005	1,500,000	1,000,000	47/47	1,500,000	47
2006	2,000,000	1,000,000	46/46	2,000,000	46
2007	2,000,000	1,000,000	45/45	2,000,000	45
2008	2,000,000	1,000,000	45/45	2,000,000	45
2009	3,500,000	1,000,000	45/45	3,500,000	45
2010	폐지	1,000,000	n.a./35	폐지	n.a.
2011	1,000,000	1,000,000	55/35	1,000,000	55

자료: EGTRRA 2001 Sec. 511, IRC Sec. 2502

- 또한 유산세에 적용되는 통합세액공제 역시 점진적인 인상 과정을 거쳤으며, 2010년 유산세가 폐지되며 증여세에서는 생애 통합세액공제(lifetime unified credit)⁴⁵⁾라는 공제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 유산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은 납세자의 생전 증여가액과 사망시 유산

44)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는 2010년 기준으로 과세구간에 따라 10%, 15%, 25%, 28%, 33%, 35%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45) 통합세액공제는 1976년 조세개혁법을 통해 증여세와 유산세를 일원화하며 생전증여 및 유언에 따른 자산이전에 대하여 단일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음.

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때 통합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증여세 납부세액에서 통합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납세자의 경우 추후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는 통합세액공제로 경감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
 - 생전에 증여세 계산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한 납세자의 경우 추후 상속세 계산시 통합세액공제 금액을 차감조정 하여야 함.
- 2010년 유산세가 폐지되며 증여세에 한해 통합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연간 공제한도금액으로 USD13,000(2010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표 Ⅲ-2〉 유산세 및 증여세 통합세액공제(미국)

(단위: USD)

과세연도	유산세	증여세
2002	345,800	345,800
2003	345,800	345,800
2004	555,800	345,800
2005	555,800	345,800
2006	780,800	345,800
2007	780,800	345,800
2008	780,800	345,800
2009	1,455,800	345,800
2010	폐지	13,000

자료: Publication 950: Introduction to Estate and Gift Taxes(www.irs.gov)

- 유산세 및 세대생략이전세의 폐지에 관한 법률은 2010년 만료될 예정임.
 - 2010년 이후 별다른 법적 조치가 없을 경우 2001년 당시의 조항이 부활될 것임.

2) 기업상속제도 개관

- 미국에서는 기업상속과 관련하여 기업상속공제⁴⁶⁾, 가족농장에 대한 평가특례⁴⁷⁾, 가

업상속에 대한 분할납부특례⁴⁸⁾ 등 세 가지 과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라 함은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상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USD675,000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
- ‘가족농장에 대한 평가특례’라 함은 농장 및 소유집중 기업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하여 유산세를 계산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함.
- 또한 ‘가업상속에 대한 분할납부특례’라 함은 소유집중기업의 지분가치가 조정총 유산가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집중기업의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유산세를 대상으로 10회를 한도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 가지 과세특례 조항은 중복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나. 가업상속공제(QFOBI deduction)

- 미국에서 ‘가업상속공제(estate tax deduction for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s, QFOBI deduction)’는 ‘1998년 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⁴⁹⁾’을 통해 가족기업과 같이 소유가 집중된 사업지분(closely-held business interests)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유산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며 도입되었음.
-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2001년 ‘경제성장 및 세금감면법(EGTRRA)’상 유산세의 점진적 폐지와 함께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폐지된 바 있음.
 - 그러나 유산세 폐지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조항이기에 2010

46) IRC Sec. 2057

47) IRC Sec. 2032A

48) IRC Sec. 6166

49) 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

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부활될 예정에 있음.

1) 기업상속재산의 범위

- 기업상속공제 대상인 ‘요건을 갖춘 가족소유 사업지분(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에서 사업지분이라 함은 개인기업,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및 파트너십의 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가족사업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인 주식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3년 내에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함.
 - 한편,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 지분의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단, 가족사업에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상속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이때 수동자산이라 함은 해당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함.
 - 운전자본(working capital)으로서 매일의 합리적인 필요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 자본취득을 위한 적립금(accumulation for capital acquisitions)
 - 배당, 임대료, 로열티, 이자, 연금 및 개인지주회사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
 - 신탁 및 파트너십 지분
 -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2) 기업상속공제 요건

- 가족소유 사업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과 관련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피상속인 요건

① 소유기간 요건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적어도 5년 동안 해당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함.

※가족구성원(member of family)의 정의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의붓자식,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부모의 직계비속
- 상기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지분율 요건

- 사망 당시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사업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단, 상속대상 사업이 여러 가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로는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음.

- 두 가족 사업의 경우 두 가족 구성원의 지분율은 70% 이상이고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세 가족 사업의 경우 세 가족 구성원의 지분율은 90% 이상이고 피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③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 요건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적어도 5년 동안 해당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material participation)했어야 함.

-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판단하는 특정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님.

- 관련 규정(regulations)에서는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당 35 시간 이상 근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재무적 책임을 부담하고 생산활동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이 덜한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는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인 고용, 경영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물리적인 근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업을 전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자산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순현금기준(net cash basis)으로 임대하고 해당 가족구성원이 해당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한 경우라면 중대한 사업참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④ 거주자 요건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거주자였어야 함.

나) 상속재산 요건

① 유산비율 요건

- 조정 총유산가액(adjusted gross estate) 중 가족사업지분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50% 유동성 테스트(50% liquidity test)라고 함.

※ 50% 유동성테스트

$$\frac{(1)}{(2)} = \frac{\text{피상속인의 사망시 이전한 QFOBI} + \text{생전에 증여한 QFOBI} - \text{상속채무}}{\text{피상속인의 총유산액} - \text{상속채무} + \text{생전 증여재산가액}} > 50\%$$

: (1)의 계산방법

- 첫째, 유산세 과세목적상 적용 가능한 할증(premiums)과 할인(discounts)을 고려하여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 가액을 평가함.
- 둘째,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 가액에서 관련 채무를 차감함.
 - 관련 채무는 (a)와 (b)의 합계액에서 (c), (d), (e)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a): 유산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 (b): 미지급 대출금 또는 총유산과 관련 있으나 그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채무
 - (c): 개인 거주주택 부채
 - (d): 교육비 및 의료비 지급에 사용된 부채
 - (e): USD10,000을 한도로 (c) 및 (d)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금액
- 셋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이전하였고(lifetime gifts), 그 가족구성원이 이를 증여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증여가액을 가산함.
 - 생전에 증여한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 가액은 증여일자에 평가한 금액을 이 용함.

: (2)의 계산방법

- 첫째, 유산세 과세 목적상 피상속인의 총 유산가액을 평가함.
- 둘째, 피상속인의 총 유산가액에서 해당 유산과 관련된 부채 및 청구액을 차감함.
- 셋째, 생전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함.
 - 피상속인이 생전에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하였고 그 가족구성원이 이를 증여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증여가액을 가산함.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함
 - 피상속인이 사망 전 3년 내에 증여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함.

② 사업장소 요건

주된 사업 장소는 미국에 소재해야 함.

다) 상속인 요건

① 사후 관리 관련 환수계약 서명 요건

-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 지분을 상속받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qualified heir) 전원은 사후 관리와 관련된 환수계약(recapture agreement)에 서명해야 함.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원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상속받는 개인을 의미함.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처분한 경우 해당 가족구성원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으로 간주함.
 - 가업상속공제 목적상 해당 기업의 현 근로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역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으로 보고 있음.

3) 가업상속공제 혜택

- 가족사업 지분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 지분가액과 USD675,000 중 적은 금액을 유산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 금액 = Min[요건을 갖춘 가족사업 지분가액, USD675,000]
- 단,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유산세 기본공제 금액과 합하여 USD1,300,000(부부합산신고의 경우 USD2,600,000)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산세 기본공제와 가업상속공제 합계액 한도는 2004년 유산세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폐지로 적용되지 않았다가 2011년 유산세 및 가업상속공제의 부활과 함께 다시 적용될 예정에 있음.

〈표 Ⅲ-3〉 유산세 기본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미국)

(단위: USD)

과세연도	기본공제 한도(A)	가업상속공제 한도(B)	합계액 한도(A+B)
2000~2001	675,000	675,000	1,300,000
2002~2003	1,000,000	675,000	1,300,000
2004~2005	1,500,000	가업상속공제 폐지	
2006~2008	2,000,000	가업상속공제 폐지	
2009	3,500,000	가업상속공제 폐지	
2010	연방 유산세(Federal estate tax) 폐지		
2011	1,000,000	675,000	1,300,000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유산세 기본공제 금액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⁵⁰⁾.

※ 가업상속공제와 유산세 기본공제 조정사례

- 2003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로 그 최대 금액인 USD675,000을 적용한 경우 유산세 기본공제로 적용 가능한 금액은 USD625,000(USD1,300,000 - USD675,000 = USD625,000)임.
- 또한 가업상속 공제대상 자산가액이 USD675,000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로 적용 가능한 금액은 기본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증가하게 됨.

(단위: USD)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가액(A)	가업상속 공제한도(B)	가업상속공제액 (C=Min(A,B))	기본공제 한도(D) ¹⁾	기본공제 적용액(E) ²⁾	총공제액 (C+E)
2,000,000	675,000	675,000	1,000,000	625,000	1,300,000
475,000	675,000	475,000	1,000,000	825,000	1,300,000
450,000	675,000	450,000	1,000,000	850,000	1,300,000

주: 1) 2003년 기준

2) 기본공제 적용액(E) = Min[기본공제한도(D), 1,300,000 - 가업상속공제액(C)]

50) IRC Sec. 2057(a)

4) 사후 관리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특정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상속인은 추가 유산세(additional estate tax)를 납부해야 함.

가) 사후 관리 요건

- 첫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받은 가족사업지분(QFOBI)을 처분해서는 안됨.
 - 단, 상속인의 가족구성원에게 처분하거나 요건을 갖춘 관리 기부금(conservation contribution)으로 처분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이때 상속인의 가족구성원은 향후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가유산세를 부담한다는데 동의해야 함.
 -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재고자산 또는 사업장비 등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 역시 예외로 함.
- 둘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이 8년의 기간 중 최소 5년 동안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녀1과 자녀2가 아버지로부터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상속받고 자녀1만이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한 경우 이는 자녀1과 자녀2 모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참여 요건을 충족시킴.
 - 만약 자녀1이 아버지의 사망 이후 10년 내에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자녀2는 계속해서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음) 자녀1과 자녀2는 각각의 지분에 대해 추가 유산세 부담을 지게 됨.
- 셋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미국의 시민권을 유지해야 함.

□ 넷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주된 사업장소를 미국으로 해야 함.

나) 추가 유산세액의 계산

□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추가 유산세는 (1) 요건을 갖춘 사업지분이 총유산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유산세에 (2)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 (1)의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유산세액은 가업상속공제(QFOBI deduction)로 인해 줄어든 유산세에 적용비율(applicable percentage)을 곱하여 계산함.

○ 적용비율은 상속인 및 그 가족구성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해당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한 햇수(number of years)에 기초하여 계산함.

– 예를 들어,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7년에서 10년 사이 발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적용받은 세제혜택의 일부만을 환수하게 됨.

〈표 Ⅲ-4〉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적용비율(미국)

피상속인의 사망 후 중대하게 사업에 참여한 햇수	적용비율
1년 ~ 6년	100%
7년	80%
8년	60%
9년	40%
10년	20%

□ (2)의 이자상당액(interest)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유산세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추가 유산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율(underpayment rate)을 적용하여 계산함.

○ 이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에 의뢰할 수도 있음.

- 단, 국세청에 의뢰하는 경우 추가금(additional interest)이 부과됨.

- 10년의 사후 관리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개시일까지 2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음.
 - 개시일(commencement date)이라 함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중대한 사업참여를 시작한 일자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03년 2월 28일 사망하였고 개시일이 2004년 4월 1일인 경우 사후 관리 기간은 2003년 2월 28일 이후 10년이 아닌 2004년 4월 1일 이후 10년의 기간임.

- 추가 유산세는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각각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하며, 이는 한 번만 부과됨.
 - 예를 들어, 중대한 사업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유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후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QFOBI)의 조기 양도를 원인으로 추가 유산세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음.

다) 신고 및 납부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 유산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 'Form 706-D'를 작성하여 추가 유산세액과 함께 그 이자상당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신고 및 납부기한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임.

다.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

- 연방소득세법⁵¹⁾에 의하면 특정 농장(farm), 소유 집중기업(closely held business)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아닌 사용가치(use value)로 평

51) IRC Sec. 2032A

가하여 유산세를 계산할 수 있음.

- 단,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총자산가치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USD 1,000,000(2009년 사망한 피상속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1) 평가특례 대상 자산

- 평가특례 대상 자산(specially valued property)이라 함은 유언집행자가 공정시장가치가 아닌 실제 사용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선택한 ‘농장’ 및 ‘소유집중 기업의 부동산’을 의미함.
 - 농장 및 부동산의 범위에는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또는 소유주 및 임차인의 고용인)이 농업 또는 기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거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역시 포함됨.
 - 또한 도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요건을 갖춘 사용을 위한 기능적인 개량 역시 평가특례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됨.
 - 반면, 농장 또는 사업용도와 관련 없는 채굴권(mineral rights) 등의 가치요소는 평가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농장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닌 그 가족구성원이 해당 농장 경영에 중대하게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장 운영목적상 피상속인이 점유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 능동적인 경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가족농장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동적인 투자 활동(passive investment activities) 또는 단순한 자산의 임대에는 평가특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비영리 목적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2) 평가특례 요건

가) 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은 농장 등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이전하여야 함.
 - 이때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농장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그 가족구성원에게 처분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원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으로 간주함.
 -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상 가족구성원의 범위와 동일함.

나) 피상속인 요건

① 거주자 요건

- 피상속인은 사망 시점에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함.

② 사업용으로 사용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해당 부동산을 농업 또는 기타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어야 함.
 - 피상속인의 생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순현금기준(net cash basis)으로 그 가족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사망 시점 사업용으로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③ 소유 및 사용기간 요건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농장 등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5년 동안 소유 및 사용하고 있었어야 함.
 - 소유권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신탁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모

두 인정되고 있음.

- 피상속인이 소유 집중기업에 농장 등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이를 임차한 기업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5년 동안 소유 집중기업에 해당하면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됨.

④ 중대한 참여기간 요건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5년 동안 농장 및 기타 사업의 운영에 중대하게 참여(material participation)했어야 함.
 - 중대한 참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단순히 농장 및 기타 사업에서 임대료, 급여, 배당 및 기타 소득을 수취한 것으로는 중대한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만약 피상속인의 퇴직 또는 장애로 인하여 중대한 참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체 기간(substitute period)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대체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은 사망시점까지 퇴직 후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거나 또는 장애상태가 지속되었어야 함.
 - 이때 장애라 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농장 및 기타 사업의 운영에 중대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 대체기간은 다음 중 이른 일자까지 8년의 기간 중 총 5년 이상으로 함.
 - 피상속인이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된 일자
 - 피상속인이 장애를 갖게 된 일자
- 배우자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참여기간 계산시 특례가 적용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8년 이내에 사망했다면 상속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산에 대해 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 적용함에 있어서 중대한 참여기간 계산시 기존 피상속인이 농장 및 기타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한 기간 역시 합산하여 계산함.

다) 상속재산 요건

① 소재지 요건

농장 등 부동산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② 자산비율 요건

요건을 갖춘 농장 등 부동산은 다음의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장 또는 소유 집중기업의 부동산의 조정가액은 총유산 조정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요건을 갖춘 농장 또는 소유 집중기업의 부동산의 조정가액은 총유산 조정가액의 25% 이상이어야 함.

이때 조정가액(adjusted value)이라 함은 특별사용가치(special-use value)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자산가치를 의미함.

- 조정가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미지급한 대출금 또는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여 계산함.

3) 평가특례

가) 농장에 대한 평가특례

농장을 사용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연간 총현금 임대료법(annual gross cash rental method)'임.

- 비교 가능한 자산의 현금임대료를 알 수 없는 경우 '연평균 순지분임대료(average annual net share rentals)'를 사용하여 평가함.
- 총현금임대료 및 연평균 임대료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3) 나)'의 소유 집중 기업의 부동산 지분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① 임대료 및 비교 가능한 자산 등의 정의

- 연간 총현금임대료법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총현금임대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역 내의 비교 가능한 실제 농장에서 역년 기준으로 수취한 총현금액을 의미함.
 - 임대료는 정상가격의 범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농장 운영비용, 임대 관련 비용 및 부채금액은 감액하지 않음.
 - 임대가치와 관련한 평가금액 및 기타 입출금내역의 경우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음.

- ‘비교 가능한 자산(comparable property)’은 평가 대상인 농장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등 평가 대상인 농장과 비교를 위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비교가능성은 모든 상황과 정황에 기초하여 결정함.
 - 토양의 유사성
 - 재배된 작물로 인해 유사한 방식으로 토양이 소실되는지 여부
 - 토양관리에 사용된 기술의 유형
 - 토지의 경사도
 - 축산용으로 이용시 토지의 가치
 - 임업용으로 이용시 수목의 비교가능성
 - 해당 농장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분리하는 경우 다른 부분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수단의 이용가능성
 - 해당 농장에 소재한 건물 등의 수, 유형 및 상태
 - 효율적인 경영, 사용 및 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 지역 시장까지 접근성 관련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 유형 및 비용
 - 토지를 부분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해야 함.

② 연평균 임대료를 이용한 평가

- 연간 총현금임대료법에 따라 농장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평균 임대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연간 총현금임대료법에 따른 농장평가액
= (비교가능한 부동산의 연평균 총현금임대료 - 연평균 부동산세) ÷ 연평균 유효이자율

- 연평균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가장 최근 5개 연도를 중심으로 계산함.
- 연평균 유효이자율은 연방 토지에 대한 신규 은행대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③ 연평균 순지분임대료를 이용한 평가

- 비교 가능한 토지의 현금임대료를 알 수 없는 경우 비교 가능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연평균 순지분임대료를 이용하여 농장을 평가함.

순지분임대료 = 비교가능한 토지에서 수취한 생산품의 총가치 - 리스계약에 따라 지불한 현금 운영비(부동산세 제외)

- 생산품은 농장의 운영 등 사업목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이에는 가축 (livestock) 역시 포함됨.
- 생산품의 총가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산품을 농림부가 설정한 기간 내에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총금액을 의미함 -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 또는 지역의 상품시장에서 판매된 생산품의 가중평균가격을 이용함.

나) 소유 집중 기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평가특례

① 적용 대상

- 농업 외의 기타 사업에 사용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특례를 적용함.
- 또한 요건을 갖춘 농장 등으로 비교 가능한 토지가 없거나 또는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기타 사업에 사용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지분에 대한 평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② 계산 방법

-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부동산 가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 농업 또는 소유집중 기업의 부동산을 전통적인 작물소출양식 또는 신중한 경영방식으로 운영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토양 적합도, 지형 배치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자본화
 - 토지의 공정 임대료 가치를 자본화
 - 농업 외의 사용 용도가 판매가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대도시 또는 휴양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일 지역 내의 농장 및 소유집중 기업 토지의 비교가능한 양도
 - 농장 및 소유집중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타 요소

4) 사후 관리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평가특례 대상자산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가) 사후 관리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내에 평가특례 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요건을 갖춘 사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평가특례의 적용은 취소되며, 상속인은 관련 유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평가특례를 적용받은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 유산세는 한 번만 부과됨.
 -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사용을 조기 중단함으로써 추가 유산세가 부과된 경우 추후 동일 부분을 조기 양도하는 경우 추가 유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음.

나) 신고 및 납부

- 평가특례 대상자산의 조기 사용중단 또는 조기 양도로 추가 유산세 과세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유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평가특례 대상자산에 대한 추가 유산세 신고시, Form 706-A를 신고서로 이용함.

라. 소유집중 기업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

- 총유산에 소유집중기업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방소득세법 제6166조에 따라 유산세의 일부를 분할납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 분할납부 요건

가) 유산비율 요건

- 총유산에 포함된 소유집중 기업의 지분가치가 조정총유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유산세를 분할납부 하는 것이 가능함.
 - ‘조정총유산(adjusted gross estate)’이라 함은 총유산가액에서 비용, 채무, 세금 및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 ‘소유집중기업의 지분(interest in a closely held business)’이라 함은 소유권, 파트너십 지분,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함.
 - 소유주(proprietorship)로서 운영하는 사업의 소유권
 -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 운영 중이었던 파트너십의 파트너 지분
 - 단, 총파트너십 지분의 20% 이상이 피상속인의 총유산에 포함되었거나 해당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4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 운영 중이었던 법인의 주식
 - 단,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이 피상속인의 총유산에 포함되었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4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소유집중 농장기업의 지분 계산시에는 농장운영을 위해 소유주, 임차인 및 종업원이 정기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주건물 및 관련 증축물의 지분 또한 포함시켜야 함.

□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루어진 증여(transfers before death)의 경우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음.

○ 단, 35%의 분할납부 요건 검토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3년 내에 증여한 가액 역시 가감하여 총유산가액을 계산해야 함.

나) 관리자산 제외 요건

□ 35%의 유산비율 요건 검토시 소유집중 기업의 지분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집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제외하여야 함.

○ 수동자산이라 함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함.

– 다른 기업의 주식은 수동자산에 해당함.

• 단, 유언집행자가 사업운영 회사(business company)에 소유권이 있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⁵²⁾의 주식 중 일부를 사업운영 회사의 주식으로 간주한 경우⁵³⁾ 이에 대해서는 수동자산으로 보지 않음.

– 요건을 갖춘 자금조달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

2) 분할납부 특례

가) 분할납부 대상 유산세

□ 분할납부 대상 유산세는 총유산세 중 소유집중 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52) 지주회사라 함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 사업회사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함.

53) 이는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에 한해 적용됨.

$$\text{분할납부 대상 유산세} = \text{총유산세} \times \frac{\text{소유집중기업 가치}}{\text{조정총유산}}$$

나) 분할납부 횟수, 기한

- 최대 분할납부 횟수는 10번을 초과할 수 없음.
- 분할납부기한은 1년 단위로 계산함.
 - 첫 번째 분할납부 기한은 최초 유산세 납부기한으로 함.
 - 두 번째 분할납부 기한은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뒤의 일자로 함.
 - 세 번째 이후 분할납부 기한은 직전 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뒤의 일자로 함.

다) 이자상당액의 계산

- 유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함.
 -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산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계산됨.
 - 200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 이자 계산시 2% 또는 45%의 이자율을 적용함
 - 2% 이자 적용 대상 유산세 = $\text{Min}[\text{분할납부세액}, \text{USD}598,500]$
 - USD598,500을 초과하는 유산세에 대해서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연간 45%의 이자율을 적용함.

3) 분할납부의 취소

- 유산세 및 그 이자상당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분할납부권을 취소하고 납부시기의 가속화(acceleration of payments)를 강제할 수 있음.
 - 또한 분할납부 요건을 갖춘 소유집중 기업의 지분을 분배, 양도, 교환 및 처분하였

거나 소유집중 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및 기타자산을 인출하였고 그 합계액이 해당 지분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권은 취소됨.

2. 독일

가. 개관

- 독일에서는 사업자산(business property)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체 및 고용의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ErbStG)⁵⁴⁾에서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2008년 12월 5일 상속세개혁법(ErbStRG)을 통해 그 공제율이 대폭 인상(35% → 85% 또는 100%)된 바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자산의 상속시 관련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음.
 - 사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취지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상속세개혁법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 사업자산의 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함과 아울러 최종적으로 사업자산을 승계받아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가가 관련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요건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상속세개혁법(ErbStRG) 이후 독일의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경제성장촉진법을 통해 2010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더 개정절차를 거침.
 - 경제성장촉진법에서는 상속세개혁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세제혜택을 더욱 강화하였음.

54) Erbschaftsteuer-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표 Ⅲ-5〉 독일의 사업자산공제

구분	상속세개혁법 이전 (~2009. 1. 1.)	상속세개혁법 이후 (2009. 1. 1. ~ 2009. 12. 31.)	경제성장촉진법 이후 (2010. 1. 1.~)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225,000: 100% • EUR225,000~: 35% 	85%, 100%	85%, 100%
사후관리 요건	none	① 85%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계속성: 7년 • 고용의 계속성: 7년간 급여 총액이 사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65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50% 이하 ②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계속성: 10년 • 고용의 계속성: 10년간 급여 총액이 사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1,0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10% 이하 	① 85%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계속성: 5년 • 고용의 계속성: 5년간 급여 총액이 사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50% 이하 ②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계속성: 7년 • 고용의 계속성: 7년간 급여 총액이 사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 • 사업자산 비율: 수동자산 10% 이하

나. 상속세 개혁법(2009. 1. 1.) 이전

□ 상속세개혁법 이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보면,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과세면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해주었음.

○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첫 EUR225,000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함.

○ EUR225,000을 초과하는 부분은 65%만을 과세소득에 포함함⁵⁵⁾.

55) ErbStG Secs. 13~17

- 이때 사업자산의 범위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거주법인의 지분을 25%를 초과하여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 역시 포함됨.

다. 상속세 개혁법(2009. 1. 1.) 이후

1) 상속세개혁법 개관

- 독일에서는 2008년 12월 상속세개혁법(ErbStRG)이 통과되기 앞서 상속세 개정 관련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된 바 있음.
 - 당시 상속세개정 관련 논의는 상속세의 존폐논란 및 상속세 평가규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상속세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독일의 경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8년 8월 1일자로 상속세법을 폐지한 바 있음.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헌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음.
 - 정부에서 헌법재판소(Verwaltungsgerichtshof)의 지침을 따르지 않자 상속세법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독일에서는 오스트리아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독일은 상속세로부터 발생하는 약 EUR4billion 규모의 세수를 포기할 계획이 없었음.
 - 오히려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상속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음.
- 2006년 11월 7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평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게 되자 상속세법 개정 논의는 평가규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기존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농림업 관련 자산과 부동산은 그 평

가방식과 특별공제로 인해 현금 및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소득이 낮게 계산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 독일의 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서는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목적상 현행시장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와 같이 상속세제의 합리화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상속세개혁법(ErbStRG)은 2008년 12월 5일 상원(Bundesrat)을 통과하였음.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

□ 상속세개혁법상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면제를 비롯하여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사업용 자산, 농림업자산,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
- 일반 인적공제 범위의 확대
- 자가소유 거주부동산에 대한 과세면제
-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면제

가) 자산 평가 방법의 개정

□ 상속세개혁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참조하여 자산의 평가 규정을 개정하였음.

-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 방법이 자산종류별로 차이가 있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음.
 - 사업자산,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해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소득이 낮게 계산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상속세개혁법상 자산의 평가 규정은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음.

- 사업자산

- 현행시장가치는 과세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경우 그 금액으로 함.
- 거래가 없었던 경우 미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시장가치를 추정함.
- 이와 같이 실질가치(단일자산의 현행시장가치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는 과세목적상 최소가치가 됨.
- 농업 및 임업 자산
 - 미래 이익에 기초하여 현행시장가치를 결정함.
- 주식
 - 과세목적상 주식의 시장가격을 사용함.
 -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산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함.
- 부동산
 - 자산의 유형에 따라 현행시장가치가 결정됨
 - 비교가치법(comparative value method), 이익법(profit method), 자산가치법(property value method) 중 하나를 적용함.
- 기타 자산
 - 동산에 대해서는 현행시장가치를 적용함.
 - 매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정기적인 지불금에 대해서는 자본가치를 적용함.

나) 인적공제 확대 등

- 상속세개혁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적공제 금액을 인상하였음.
- 상속세개혁법상 인적공제액 인상 내용은 다음 <표 Ⅲ-6>와 같음.

〈표 Ⅲ-6〉 상속세개혁법상 주요 개정사항: 인적공제

상속인 구분		인적공제 금액(EUR)	
		2008. 12. 31. 이전	2009. 1. 1. 이후
Ⅰ	배우자	307,000	500,000
	자녀	205,000	400,000
	손자손녀	51,200	200,000
	부모, 조부모(상속의 경우)	51,200	100,000
Ⅱ	부모 및 조부모(증여의 경우), 형제자매, 조카, 의붓부모,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10,300	20,000
Ⅲ	기타 상속인 및 수증인, 특별목적 기부	5,200	20,000

□ 또한 상속세개혁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조정 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상속인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세율체계를 유지하던 것을 구분Ⅱ와 구분Ⅲ의 세율을 인상 및 일치조정하며 상속세 세율체계를 간소화하였음.

○ 이로 인해 구분Ⅱ와 구분Ⅲ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음.

〈표 Ⅲ-7〉 상속세개혁법상 주요 개정사항: 상속세율

과세표준(EUR)		2008. 12. 31.까지 세율/2009. 1. 1. 이후 세율(%)		
2008. 12. 31.까지	2009. 1. 1. 이후	구분 Ⅰ	구분 Ⅱ	구분 Ⅲ
~ 52,000	~ 75,000	7/7	12/30	17/30
52,000 ~ 256,000	75,000 ~ 300,000	11/11	17/30	23/30
256,000 ~ 512,000	300,000 ~ 600,000	15/15	22/30	29/30
512,000 ~ 5,113,000	600,000 ~ 6,000,000	19/19	27/30	35/30
5,113,000 ~ 12,783,000	6,000,000 ~ 13,000,000	23/23	32/50	41/50
12,783,000 ~ 25,565,000	13,000,000 ~ 26,000,000	27/27	37/50	47/50
25,565,000 ~	26,000,000 ~	30/30	40/50	50/50

다) 자가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 상속세개혁법에서는 자가소유 거주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향후 10년간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면 상속세를 과세면제 함.
 - 단, 치료목적의 이주 또는 사망하는 경우 등 충분한 사유 없이 10년 내에 상속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소급해서 과세함.
 -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상속주택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해 상속세를 과세면제 함.
 - 상속주택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평방미터까지는 과세면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함.
 - 상속주택을 양도하지 않고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없이 납부연이 가능함.

라)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면제

- 상속세개혁법에서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주제임.
 - 동 규정의 목적은 사업주가 해당 법인수준 또는 새로운 사업주 수준에서 유동성 부족 또는 파산에 대한 문제없이 그 지분을 이전한다는데 있음.
- 상속세개혁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2) 상속세개혁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에서 다루기로 함.

2) 상속세개혁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

- 독일에서는 상속세개혁법을 통해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규정이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상속받아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상속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관련 세제가 개선되었음.

- 상속세개혁법 시행 전과 비교하여 공제비율이 인상되었으며(35%→85%),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과세면제(100%) 되는 혜택도 가능하게 되었음.
- 사후 관리 규정이 추가되어 사업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혜택을 추징함으로써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의 취지를 공고히 했음.

- 상속세개혁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단, 2009년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도 동 특례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가) 공제대상 사업자산의 범위

-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자산(business property)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사업자산의 사례로는 농림업 자산 및 농경지(cultivated land), 사업전체의 취득을 위한 국내 자산, 법인 주식, 파트너십의 파트너십 지분 등이 있음.
 - 단, 주식회사 지분의 경우 전체 지분의 1/4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 지분을 계산시 가족이 기업을 분산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지분을 합산하여 1/4의 비율을 적용함.
- 단, 단순 관리자산(administrative assets) 또는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사업자산의 일정비율(50% 또는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⁵⁶⁾.

56) ErbStG Secs. 13b(2)

※단순 관리자산(또는 수동자산)의 사례

- 임대자산
 - 제3자에게 임대한 토지, 토지요소, 임차권이 있는 권리 및 건물 등
- 법인의 주식
 - 단, 지분율이 25% 이하이고 은행업 및 보험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투자자산
- 유가증권 및 유사 청구권
 - 단, 은행업 및 보험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예술품, 과학수집품, 도서, 기록보관소, 동전, 귀금속, 보석류 등
 - 단, 이와 같은 물품을 거래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공제 혜택 및 요건

(1) 85% 공제

-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산의 85%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85% 공제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계속성, 사업자산 비율 요건 등 세 가지가 있음.

①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승계 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고용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650% 이상이어야 함.

③ 사업자산 비율요건

-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2) 100% 공제

- 독일에서는 상속인이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 요건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산의 85%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과세면제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승계 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10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고용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사업승계 후 10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사업승계 후 10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 총액의 1,000% 이상이어야 함.

③ 사업자산 비율요건

-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됨.

다) 사후 관리 요건

- 과세면제 혜택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고용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례하여 경감됨.

- 사업승계 후 7년(또는 10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계 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단, 사업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자본이득을 6개월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 사업승계 후 7년(또는 10년)간 급여총액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라. 경제성장 촉진법(2010. 1. 1.) 이후

1) 경제성장촉진법 개관

- 독일에서는 경제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이 2009년 12월 4일 하원(Bundestag)을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연방의회(Bundesrat)를 통과한 바 있음.
 - 이는 경기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수혜자는 자녀가 있는 개인, 기업, 상속인, 호텔·숙박업계로 연간 EUR85억 규모의 감세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경제성장촉진법상 세법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경제성장촉진법상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

- 경제성장촉진법을 통해 독일의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은 더욱 완화되었음.
 - 85% 공제와 관련하여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에서 사업자산의 상속 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7년 → 5년) 및 유지되어야 하는 총급여액 규모(650% → 400%)가 축소되었음.
 - 100% 공제와 관련하여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에서 사업자산의 상속 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10년 → 7년) 및 유지되어야 하는 총급여액 규모(1,000% → 700%)가 축소되었음.

가) 공제대상 사업자산의 범위

- '다. 상속세개혁법 이후'에서 상속세개혁법상 공제대상 사업자산과 일치함.

나) 공제 혜택 및 요건

(1) 85% 공제

- 독일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을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산의 85%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①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승계 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고용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함.

③ 사업자산 비율 요건

-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2) 100% 공제

- 상속인은 85% 공제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산을 전액 과세 면제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승계 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고용의 계속성 요건

- 상속인은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사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이어야 함.

③ 사업자산 비율 요건

-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수동자산(passive assets)은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됨.

다) 사후 관리 요건

- 과세면제 혜택은 다음의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경감됨.
- 사업승계 후 5년(또는 7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계 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단, 사업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자본이득을 6개월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 사업승계 후 5년(또는 7년)간 급여총액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영국

가. 상속세제 개관

1) 상속세 과세체계⁵⁷⁾

- 영국의 경우 상속세(inheritance tax)는 대부분 사망 시점에 유산(estate)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생전 증여 또는 신탁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함.
 - £325,000(2010~2011년) 미만의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음.
 - 2007년 10월부터 부부 및 등록된 파트너(registered civil partner)의 경우 두 배우자 중 나중에 사망하는 자의 사망 시점에 과세가 면제되는 유산금액은 £650,000(2010~2011년)임.

〈표 Ⅲ-8〉 영국의 상속세 면세점 금액

(단위: 파운드)

적용기간	면세점 금액
2005. 4. 6 ~ 2006. 4. 5.	275,000
2006. 4. 6 ~ 2007. 4. 5.	285,000
2007. 4. 6 ~ 2008. 4. 5.	300,000
2008. 4. 6 ~ 2009. 4. 5.	312,000
2009. 4. 6 ~	325,000

-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의 경우는 40%, 생전의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함.
- 면세점(threshold) 미만의 상속에 대해 과세면제를 허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감면 및 공제제도(exemption and relief)를 두고 있음.

57)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intro/basics.htm>, 'Inheritance Tax - the basics'

- 배우자간 면제(spouse or civil partner exemption)에 의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유산이나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 면제됨.
 - 자선단체 면제(UK charity exemption)는 영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생전 또는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 면제됨.
 - 잠재적 면제 이전(potential exempt transfers)이란 증여가 있는 후 7년 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임.
 - 연간 면제(annual exemption)란 매년 £3,000까지의 증여(gift)에 대해 과세면제함.
 - 소액 기부 과세면제(small gift exemption)란 £250 미만의 소액 기부(small gift)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임.
 - 결혼할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면제됨.
 - 사망한 자가 소유하였던 기업(회사), 농장, 삼림지대 또는 문화유산(National Heritage) 자산 등의 상속에 대해 적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relief)가 있음.
- 상속세의 납부는 일반적으로 유산관리인(executor or personal representative)이 납부하게 됨.
- 그러나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수탁인이 납부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증여를 받은 자 또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분납을 허용하고 있음.
- 분납이 허용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피상속인의 주택 등), 특정 주식 및 유가증권,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s) 이외의 기업의 순가치, 농업용 토지 및 자산
 - 분납이 허용되는 주식 및 유가증권은 사망시점에 주식 및 증권이 피상속인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율 50% 초과)이며, 비상장주식도 포함함.
 -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경우 즉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함.
 - 분납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연 1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며 미납 세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함 금액을 납부함.
 - 사업용 또는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되지 않지만, 사업용자산과 농

업용 자산의 경우 100% 상속세 감면(relief)이 적용되므로 분할납부를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2) 가업상속 관련 세제

- 영국은 사업용 자산 또는 농업용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공제율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임.
- 적용 요건에 있어서 사전적인 적용 요건을 두고 있음.
 - 사업자산공제의 경우 과거 2년간 계속해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야 함.
 - 농업자산공제의 경우 2년의 소유요건과 7년의 점유요건을 만족하여 함.
- 이전 시점에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허용하고, 이전이나 이후의 사후적인 적용 요건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임.

〈표 Ⅲ-9〉 영국의 사업자산 및 농업자산 공제제도 개요

	적용 요건	대상자산	공제율
사업자산 공제	① 적격한 사업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
	② 중요사업자산	지배비상장주식의 유가증권	100%
	③ 2년간 소유	상장회사의 지배주식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농업자산 공제	① 2년간 농업을 목적으로 점유	농업용 토지 및 목초지, 삼림지 및 가축 및 어류의 사육에 사용되는 건물 등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임대용 농지: 100%
	② 7년간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	요건 만족하는 주식 등	기타 농업자산: 50%

나.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

- 영국의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는 1976년 4월 7일 이후의 상속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이후 감면율은 계속 변경되어 왔음.
 - 사업자산공제에 관한 내용은 상속세법(Inheritance Tax Act 1984)의§103~§113에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산공제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요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의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액을 감면(relief)하는 것임.
 - 감면액은 이전된 자산의 가치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생전 이전(transfers in life)과 사망으로 인한 이전 모두에 대해 적용함.
 -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의 경우 영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자산공제는 지역적인 제한(territorial limitation)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업용 자산이 적용범위에 포함됨.

2) 적용 요건

-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적격한 사업(qualifying business)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자산이 중요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이어야 하며, 셋째,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소유했어야 함.
 - 또한 판매계약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어야 함.
 - 대상 자산이 주식인 경우, 청산이 진행 중인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적격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됨.
- 모든 자산이 공제 대상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자산은 공제에서 제외되며, 공제가 제외되는 제외자산(Excepted assets)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⁵⁸⁾.

- 제외자산이란 ① 자산의 이전(transfer) 직전에 2년간 계속해서 사업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로(wholly or mainly) 사용되지 않았고 ② 이전 시점에 있어서 미래 사업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 자산임.

가) 적격한 사업(Qualifying business)

- 적격한 사업이란 전문직 또는 천직(profession or vocation)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함⁵⁹⁾.
 - 종마사육장, 화가, 조각가, 음악가, 작가와 같은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산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기업도 있음.
 - 사업자산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기업이란 ① 유가증권(securities), 주식, 토지 및 건물의 거래 또는 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 ②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③ 사업(business)이 판매 계약의 대상인 경우, ④ 회사 주식(shares in the company)이 판매 및 청산 계약의 대상인 경우(판매 및 청산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재건 또는 합병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임.

나) 중요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

- 중요사업자산이란 ① 기업 또는 기업 지분(예: 파트너십의 파트너지분)을 구성하는 자산, ② 증여(transfer) 직전에 회사의 통제권을 갖고 있던 양도자(transferor)가 이전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③ 자산의 증여 직전에 직접적으로 회사의 통제권이 있던 양도자가 증여하는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④ 통제권을 갖는 양도자의 회사 또는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wholly or mainly) 사용되었던 토지 및 건물, 기계 및 설비자산 ⑤ 이전 직전에 양도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었고 증여자가 수익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신탁에

58) 영국 국세청, "SVM111210-IHT Business Property Relief: Excepted Assets-Introduction"

59) "Business includes a business carried on in the exercise of a profession or vocation but does not include stud farms, painters, sculptors, musicians and many authors." IHTA 1984 §103(3)

출연된 토지, 건물, 기계 및 설비자산임.

다) 소유기간 요건

- 상속 및 증여 직전에 2년 동안 양도자가 소유한 자산에 한해 중요사업자산으로 봄⁶⁰⁾.
 - 배우자(spouse or civil partner)의 사망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 경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 일부 자산의 대체가 있었던 경우라도 이전이 있기 직전 5년 이내에 속하는 기간 중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양도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했었던 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에는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자산의 대체, 조직재편, 연속이전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2년의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 주식이나 유가증권이 대체되는 경우, 이전 직전 5년 중 2년 동안 양도자가 소유한 자산이고 대체된 자산이 적격한 자산이면 감면 대상에 포함됨.
 - 조직재편 등을 위한 주식교환 및 보너스 주식 등을 받은 경우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보유기간을 만족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및 추가로 지급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함.
 -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하여 이전받은 후 2년간 보유하고 주식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1) 감면대상 자산 및 감면을

-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를 적용하려면 중요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의 이전이 있어야 함.

60) IHTA 1984 §106

- 사업자산공제의 적격한 자산이라면, 각 자산에 적용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짐.
 - 감면율에 따라 자산의 자본적 가치의 일정비율을 감액시키는 방식임.
 - 도입당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30% 또는 20%의 감면율 적용하였으나 몇 차례의 감면율 인상이 있었고 1996년 4월 6일 이후 상속분부터 100% 감면하도록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Ⅲ-10〉 사업자산공제의 자산유형별 감면율

자산유형	감면율(%)
비상장 회사의 주식	100
이전 직전에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비상장 회사의 유가증권 ¹⁾ (securities)	100
상장 회사의 지배 주식(의결권 주식의 50% 초과)	50
이전 직전까지 양도자가 통제권이 있던 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주: 채무증서(debentures, loan notes)도 포함함.
 자료: 영국국세청, 'SVM111040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Categories of business property and rates of relief'

- 만일 토지 및 건물이 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이지만 해당 자산의 일부가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을 별도의 자산으로 봄.
 - 일부분의 자산이라도 사업자산공제의 적용 요건을 만족하면 중요사업자산의 가치에 포함함.

3) 중요사업자산의 가치 측정

- 사망한 자의 기업 및 기업 지분의 가치로부터 100%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가치는 회사의 장부에 나타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100%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장부가 대신 시장가치로 의

조정이 필요함.

- 토지, 건물, 주식, 영업권, 기계장치와 같은 기업의 개별자산은 장부가치로 포함할 수 있음.

4) 사후 관리

-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하여 이전받은 자산에 대하여 이전 후에 이행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사업자산공제를 적용한 후 2년간 보유하고 주식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산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 사업자산공제(Business Relief) 외에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Relief)가 있으며, 동일한 자산이 사업자산공제와 농업자산공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농업자산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이전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는 사업자산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5) 생전의 이전⁶¹⁾

- 생전의 이전인 경우 자산의 이전 후 7년 이내에 증여자(transferor)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계속 적용되며, 이를 잠재적 감면이전(PET: Potentially Exempt Transfer)이라 함.
 - 만일 생전 증여 후 7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증여 후 7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생전증여인 경우 추가적인 요건을 만

61) 영국 국세청, "SVM111260 -IHT Business Property Relief: Relief on lifetime transfers - (additional) tax payable on transferor's death within seven years."

족하여야 함.

- 추가적인 요건은 수증자(transferee)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증여자의 사망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생전 증여인 경우 증여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계속 비상장을 유지하여야 함.

다.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

- 농업자산공제(Agricultural Relief)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국에 소재하는 농업용 자산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1) 적용 요건

- 농업자산공제를 적용하려면 농업용자산에 대한 점유 요건 또는 소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점유 요건(occupation test)란 이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농업을 목적으로 증여자(transferor)가 점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 소유 요건(ownership test)란 이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7년간 계속해서 농업을 목적으로 증여자(transferor)가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 해당자산이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의해 점유되는 경우, 증여자가 통제하고 있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파트너십이 점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파트너들이 점유하는 것으로 봄.
- 이전 시점에 양도자(transferor)가 농업용 자산 또는 농업 회사의 지분에 대한 판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재건 또는 합병을 위한 계약일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증여자(transferor)의 사망 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생전의 이전(lifetime transfer)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

- 추가적인 요건이란 이전 시점부터 양도자의 사망 시점까지 계속해서 농업자산이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농업 목적으로 점유되어야 함.
- 생전의 이전이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후 7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하지 않는 잠재적 면제 이전(PET: Potentially Exempt Transfer)에 해당되어야 함.

2) 대상자산

- 대상자산은 농업용 자산(Agricultural property)임.
 - 농업용 자산이라 함은 농업용 토지 및 목초지, 삼림지 및 가축 및 어류의 사육에 사용되는 건물 등을 말함.
 - 또한 토지에 딸려있는 농가주택(cottage, farm building, farm houses)도 포함함.
 - 영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함.
-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식 및 증권에 대해서도 농업자산공제를 적용함.
 - 요건이란, ① 주식 및 증권의 이전에 의해 회사의 통제권(control)이 이전될 것 ② 회사의 자산과 주식 및 증권으로 이루어진 농업자산이 농업가치에 귀속될 수 있을 것 ③ 회사가 농업용자산과 관련하여 점유 요건 및 소유 요건(occupation/ownership tests)을 만족할 것 ④ 양도자(transferor)가 주식 및 증권에 관한 소유권 요건(ownership requirement)을 만족할 것 ⑤ 주식 및 증권이 이전 시점에 판매를 위한 계약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농업자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3) 공제율

- 이전된 가치의 일정비율을 상속자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전 자산의 내용에 따라 100% 또는 50%가 공제됨.
 - vacant possession이 있는 토지의 이전에 대해서 100% 공제함.
 - vacant possession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개입 없이 농업을 목적으로 토지

를 소유 및 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는 경우임.

-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대되어 온 농지의 이전에 대해서 100% 공제함.
- 야생동물 서식지에 사용되기 위한 농지 및 건축물의 이전에 대해서도 100% 공제함.
- 그 외의 농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50% 공제됨.

4. 일본

가. 상속세제 개관

1) 상속세 과세체계

- 일본의 상속세는 상속,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또는 사망증여(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 취득 시점의 시가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함.
 - 기본적으로 유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가득에 대해 과세되는 개인소득세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함.
- 일본의 상속세제는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과세 방식을 기초로 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즉, 상속세 총액의 산정은 실제의 유산분할에 관계없이, 유산총액 및 법정상속인의 수와 그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함.
 - 그 후 개인의 납부세액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의 총액을 실제의 상속세 비율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에서 배우자의 세액경감 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각종세액공

제를 조정하여 세액을 산출함.

- 개인으로부터 증여(유증 및 사인증여 제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재산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증여세(법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소득세)가 과세됨.
 - 증여세는 상속과세의 존재를 전제로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과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과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은 1985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음.
 - 1975년 이후 개인재산의 증가 및 지가의 상승,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을 고려하여 정액 공제액을 2,000만엔에서 4,000만엔으로 인상하였고 법정상속인비례공제액도 400만엔에서 800만엔으로 인상하였음.
 - 그 후 1992년부터 실시되었던 토지에 대한 상속세 평가의 적정화에 따라 정액공제가 4,800만엔으로 법정상속인비례공제액은 950만엔으로 인상되었음.
 - 1994년 세제개정으로 세제의 간소화 측면에서 정액공제가 5,000만엔으로 법정상속인비례공제가 1,000만엔으로 각각 인상되었음.

〈표 Ⅲ-11〉 기초공제액 추이

개정연도	상속세	증여세
1975년	2,000만엔 + (4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60만엔
1985년	4,000만엔 + (8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92년	4,800만엔 + (950만엔 × 법정상속인 수)	
1994년	5,000만엔 + (1,0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2001년		110만엔

- 상속세액의 산출방법은 유산액에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분에 의해 안분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의 가격에서 기초공제액 110만엔을 차감한 잔액에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함.

〈표 Ⅲ-1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000만엔 이하	10%	-	200만엔 이하	10%	-
3,000만엔 이하	15%	50만엔	300만엔 이하	15%	10만엔
5,000만엔 이하	20%	200만엔	400만엔 이하	20%	25만엔
1억엔 이하	30%	700만엔	600만엔 이하	30%	65만엔
3억엔 이하	40%	1,700만엔	1,000만엔 이하	40%	125만엔
3억엔 초과	50%	4,700만엔	1,000만엔 초과	50%	225만엔

주: 2010년 7월 현재 세율임.
 자료: 일본국세청 홈페이지

- 생전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의 다음 세대로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자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시정산과세제도가 신설되었음.
 - 생전증여에 대해 수증자의 선택에 의해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해 종래의 증여세보다 경감, 간소화된 증여세를 지불하고 그 후 상속시 그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 간에 정산을 하는 제도임.
 -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증여자는 65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는 20세 이상의 자녀인 추정상속인임.

- 상속세액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분할납부를 하려면 상속세가 10만엔을 초과하고 현금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납세액 및 이자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연납세액이 50만엔 미만이고 연납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음.
 - 연납기간은 최장 5년임.

2) 기업상속세제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08년도에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음.
 - 중소기업은 일본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2006년판 중소기업백서에 의하면 연간 29만개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있고, 그 중 약 7만개 회사가 '후계자 부재'를 폐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폐업으로 인한 고용의 상실이 매년 20만~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및 기술의 상실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경영승계원활화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경영승계원활화법의 주요 내용은 ① 사업승계세제의 확대, ②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③ 금융지원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사업승계세제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사업승계를 하고자 할 때에 장애요인 중 하나인 상속세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의 경감조치로서 과거에 10% 감액하던 것을 80% 납부유예로 개정함으로써 세부담 경감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한 것임.

- 현행 기업상속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조치는 <표 Ⅲ-13>과 같음.

〈표 Ⅲ-13〉 사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례조치

	근거 조항	도입 시기	대상 자산	특례 내용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유예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7의 2, 제70조의 3	2009년	비상장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중 주식의 과세가액의 80%에 상응하는 세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유예, 피상속인 사망시 등 납세 면제 - 증여세 중 주식 등에 대하는 증여세의 납세 유예
농지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 유예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6	1975년	농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투자가격(농지본래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납세 유예, 상속인 사망시 또는 신고 후 20년 경과시 등 납세 면제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4	1964년	농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납세 유예 - 증여자 사망시 등 납세 면제
소규모 택지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특례	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 4	1983년 (1975년부터 통달에의해 평가감)	사업용 및 거주용 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감액 - 사업계속: 400㎡까지 80% 감액 - 거주계속: 240㎡까지 80% 감액 - 상기 외: 200㎡까지 50% 감액

자료: 「相續税の課税方式に關する一考察」(稅務大學校, 宮脇義男)에서 수정

나. 비상장 주식 등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납세유예⁶²⁾

□ 사업승계에 관계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이하 ‘원활화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 세제개정에서 신설되었음.

○ 세제상 납세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함.

62) 일본국세청,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

<http://www.nta.go.jp/taxanswer/sozoku/4148.htm>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7의 2

일본국세청,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유예」

<http://www.nta.go.jp/taxanswer/zoyo/4439.htm>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7, 제70조의 7의 3, 제70조의 7의 4

- 원활화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본금 또는 상시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본금 기준 또는 상시종업원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함.

〈표 Ⅲ-14〉 원활화법에서의 중소기업 범위

주요 사업	자본금	상시종업원 수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상기 산업 내 고무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공업용벨트제조업 제외)		900인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인 이하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100인 이하
상기 산업 내 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서비스업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여관업	5천만엔 이하	200인 이하
소매업	5천만엔 이하	50인 이하

- 후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경영자인 피상속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그 후계자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주식 등의 과세가액의 80%에 상응하는 세액을 경영승계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납세유예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중 주식 등에 대응하는 증여세를 납세 유예함⁶³⁾.
- 납세 유예된 세액은 후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됨.
 - 납부 면제 되기 전에 특례적용을 받아오던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자와 더불어 납부하여야 함.

63) 상속세 납세유예의 경우 2008년 10월 1일 이후의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적용하고 증여세 납세유예의 경우 2009년 4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 적용함.

1) 적용 요건

- 상속 개시 전 또는 증여 전에 중소기업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지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함.

가) 회사의 요건

- 상속세 납부유예를 적용하려면, 승계받은 회사가 ① 비상장회사일 것 ② 중소기업일 것 ③ 종업원이 1인 이상일 것 ④ 자산보유형 회사 또는 자산운용형 회사로서 일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⑤ 풍속영업회사⁶⁴⁾가 아닐 것 ⑥ 총수입 금액이 0이 아닐 것이 라는 6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형회사 및 자산운용형회사로서 일정한 것이란 자산보유형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실질적 자회사주식 제외), 부동산(자사이용부동산 제외), 현금, 예금, 골프장회원권, 귀금속 등의 특정자산의 보유비율이 총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의 70% 이상인 회사이고 자산운용형회사의 경우, 특정자산으로부터의 운용수입이 총수입 금액의 75% 이상인 회사를 말함.
 - 자산보유형회사 및 자산운용형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업실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실태가 있는 회사란 ① 상시사용종업원이 5인 이상이고 ② 상시사용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소유 및 임대하고 있으며 ③ 3년 이상 계속해서 상품판매업(상품의 판매, 자산의 대부 및 노무의 제공)을 행하는 회사임.

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요건

- 선대경영자인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은 ① 승계한 회사의 대표자이고 ② 상속 및 증여 직전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족 관계에 있는 사람(선대경영자 및 선대경영자와 동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총의결권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후계자를 제외한 자 중 가장 많은 의결권 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64) 성풍속 관련 특수영업

○ 또한 선대경영자인 증여자는 증여시점까지 회사의 임원을 퇴임하여야 함.

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요건

- 상속인은 ① 피상속의 친족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부터 5개월 후의 시점에 회사의 대표자이어야 하고 ③ 상속 개시 시점에 있어서 후계자 및 후계자와의 동족 관계에 있는 자의 총 의결권수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하고 그 중 가장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여야 함.
- 수증자는 ① 선대경영자의 친족일 것 ② 회사의 대표자일 것 ③ 20세 이상일 것 ④ 임원 등에 취임하여 3년 이상 경과할 것 ⑤ 후계자 및 후계자와 동족 관계 등이 있는 자들이 총의결권수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 중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대상 자산

- 대상 자산은 비상장주식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한도로 함.
 - 상속세 납세유예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과 상속 전 보유주식의 합이 총 발행주식의 2/3 미만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납세유예 대상이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과 상속 전 보유주식의 합이 총 발행주식의 2/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2/3 한도 내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납세유예를 적용함.
 - 증여세의 납세유예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선대경영자가 증여 직전에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수와 후계자가 증여 전부터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를 합한 주식이 증여 직전의 발행주식 총수의 2/3 미만이면 선대경영자가 증여 직전에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를 한도로 하지만 선대경영자가 증여 직전에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수와 후계자가 증여 전부터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를 합한 주식이 증여 직전의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이면 발행주식 총수의 2/3 범위 내에

서 선대경영자가 증여한 주식 수를 한도로 함.

- 증여세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도 이상의 주식 등의 증여를 받아야 함.
- 후계자가 증여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3) 특례 내용

- 상속세 납세가 유예되는 세액은 특례적용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80%에 상응하는 세액임.
- 증여세 납세가 유예되는 세액은 비상장주식 이외의 수증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 전액을 납세유예하고 비상장 주식 이외의 수증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세유예함.

4) 사후관리제도

가) 사업의 지속

- 사업승계와 관련한 비상장주식의 납세유예제도를 적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5년간 매년 1회의 사업지속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지속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부터 5년간임.
-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① 인정을 받은 회사의 대표자를 계속하고, ② 상시종업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며 ③ 상속한 대상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함.
 - 뜻하지 않은 사고로 대표자를 역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장애자 수첩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대표자를 퇴임해도 대신 인정이 계속됨.

- 상시고용인의 수는 후생연금보험 및 건강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판정함.
-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조직 재편(합병, 주식 교환, 주식 이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인정됨.

나) 사업지속에 관한 신고의무

- 사업 계속기간 중에는 매년 1회, 보고 기준일(상속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마다의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산업국에 「사업계속 상황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대 경영자, 후계자 및 회사와 관련되는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확인서를 교부함.
 - 보고기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계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속신고서」는 사업 계속기간 중에는 매년 1회, 기간 경과 후에는 3년에 1회 제출함.
 - 「계속신고서」제출시 경제산업국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함.
 - 「계속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가 유예 되고 있는 상속세의 전액과 이자세를 아울러 납부하여야 함.

다) 유예세액의 납부 면제

- 납부 유예된 상속세액은 납부가 면제되거나 유예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상속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후계자가 사망한 경우, ② 회사가 파산 또는 특별청산한 경우, ③ 납세유예대상주식의 시가가 유예세액을 하회하는 때에 당해주식을 양도한 경우, ④ 후계자에게 대상주식을 증여한 경우임.
- 증여세의 경우 선대경영자가 사망했을 경우 또는 선대 경영자의 사망 전에 후계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예세액의 납부가 면제됨.
 - 선대경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유예의 특례를 받은 비상장주식등

을 후계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시에 가액에 의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함.

- 회사가 채무초과에 빠져 파산 또는 특별 청산한 경우에는, 주주인 납세유예 대상자에게 분배되는 회사 재산도 없고 납세가 곤란해지게 되므로 유예세액은 면제가 됨.
 - 다만, 직전의 5개 사업년도에 있어서 「유예대상자 및 당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받은 배당 및 과대 임원보수 등은 납세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고액의 배당 등을 받아, 유예세액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납세 유예 대상 주식의 시가가 유예 세액을 밀도는 만큼 하락한 경우에 유예세액의 전액 납부를 요구하면, 사실상 사업 계속을 위한 주식 양도가 곤란하게 됨.
 - 따라서 동족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보유주식의 전부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시가를 넘는 유예 세액이 면제됨.
 - 시가 또는 양도가 중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납세함.
 - 다만, 직전의 5개 사업년도에 있어서 「유예대상자 및 해당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받은 배당 및 과대 임원 보수 등은 납세할 필요가 있음.

- 신고기한 후 5년을 경과한 후에 특례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일정한 친족에게 증여하여 그 친족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유예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유예세액이 면제됨.

라) 유예세액의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유예세액에 대하여 납부 면제가 되기 전에 유예세액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유예세액의 납부사유란 ①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후계자가 대표권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일정한 기준일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일정 기준 미만

인 경우, ③ 총수입 금액이 0이 된 경우, ④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후계자와 후계자의 동족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의결권 수가 총 의결권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가 된 경우, ⑤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후계자의 동족 관계에 있는 자 중 1인이 후계자보다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⑥ 후계자가 특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⑦ 특례대상회사가 해산한 경우임.

- 5년의 경영승계 기간 후에 특례적용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비율에 따라 유예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5) 다른 특례제도와의 적용관계

- 소규모택지특례제도와는 병행하여 적용을 허용함.

다. 농지의 상속에 대한 납세유예⁶⁵⁾

- 농업상속인의 농지 상속에 대한 납세유예란 농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 또는 농업경영 기반강화촉진법에 의한 대부를 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일정한 농지 등을 상속 받아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 중 농업투자 가격에 의한 가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은 그 상속한 농지 등에 대해 상속인이 농업을 영위하는 한 납세를 유예했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 납세가 면제되는 제도임.
 - 농업투자가격이란 농지 등이 계속해서 농업용으로 제공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관할 국세국장이 결정한 가격을 말함.

65) 일본국세청, 「農業相続人が農地等を相続した場合の納税猶予の特例」
<http://www.nta.go.jp/taxanswer/sozoku/4147.htm>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6

1) 적용 요건

가) 피상속인의 요건

-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피상속의 요건은 ① 사망 시점까지 농업을 영위하던 사람, ② 농지 등을 생전 일괄 증여 한 사람(사망 시점까지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 유예 등의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③ 사망 시점까지 상속세의 납세유예 적용을 받고 있던 농업상속인 또는 농지 등의 생전일괄증여의 적용을 받고 있던 수증자로, 장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농업용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로 인해 임차권등의 설정에 의한 대부를 한 사람, ④ 사망 시점까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한 대부를 하고 있던 사람임.

나) 상속인의 요건

- 특례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인은 요건을 만족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하며 상속인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상속인의 요건이란 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농업경영을 개시하여 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농지 등의 생전 일괄증여 특례가 적용되는 수증자로, 농지 등에 대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농업 경영을 이양하여 세무서장에 신고한 사람(증여자의 사망일 후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③ 농지 등의 생전일괄증여의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로, 장애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대부하여 세무서장에 신고한 사람, ④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한 대부를 한 사람임.

다) 적용대상 농지의 요건

- 특례 적용대상 농지는 5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함.

- 대상 농지는 ① 피상속인이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던 농지 등에서 상속세의 신고 기한까지 유산분할된 것 ② 피상속인이 특정 대부를 실시하고 있던 농지 또는 목초지에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유산분할된 것 ③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이 곤란하여 대부를 실시하고 있던 농지 등에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유산분할된 것 ④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일괄증여에 의해 취득한 농지 등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증여세의 납세유예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것 ⑤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일괄증여를 받고 있던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농지 등이라 함은 특정시가화구역 이외의 구역에 있는 것으로 농지 및 준농지(10년 이내에 농지 및 목초지로 개발하고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말함.

라) 납세면제 요건

- 납세 유예된 세액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됨.
 - 요건이라 함은 ①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특례 적용을 받은 상속인이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농지 등의 전부를 증여세의 납세유예가 적용되는 생전일괄증여를 한 경우, ③ 특례의 적용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농업을 20년간 계속 했을 경우를 말함.

2) 사후 관리

- 농지등에 대해 납세유예되었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특례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양도란 양도, 증여, 전용 외에 지상권, 영구소작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및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러한 권리의 소멸 등을 모두 포함함.
 - 특례농지 등과 관련되는 농업 경영을 폐지한 경우,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특례적용을 받은 준농지에 대해 신고기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농업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예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유예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유예기한까지 기간에 따라 이자가 부과됨.

라. 농지의 증여에 대한 납세유예⁶⁶⁾

-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지의 전부 또는 목초지 및 준농지의 일부분을 그 농업을 계승하는 추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할 경우, 그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 과세되는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납세가 유예됨.
 - 농지 등의 납세유예 세액은 수증자 또는 증여자 중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납세가 면제됨.
 -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농지 등 납세유예 세액의 납세가 면제되었을 경우, 특례 적용을 받아 납세 유예되었던 농지(‘특례농지’라 함)는 증여자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됨.

1) 적용 요건

가) 증여자의 요건

- 농지를 증여한 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증여자의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않는 자이어야 함.
 - 증여자의 배제 요건이란 ① 증여를 한 해의 전년도 이전 기간에 증여자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던 농지를 그 사람의 추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농지가 상속시정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② 증여한 해에 그 증여 이외의 증여에 의해 농지, 목초지 및 준농지의 증여를 하는 경우, ③ 과거에 이미 납세 유예 특례를 적용 받는 증여를 한 경우임.

66) 일본국세청, 「農業後継者が農地等の贈与を受けた場合の納税猶予の特例」
<http://www.nta.go.jp/taxanswer/zoyo/4438.htm>

나) 수증자의 요건

- 증여자의 ① 추정상속인으로서 ② 농지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③ 증여로 취득한 날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④ 증여에 의해 농지 및 목초지를 취득한 후 신속하게 그 농지 및 목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임.

다) 특례농지의 요건

- 농지 등이 특례적용을 받으려면, ① 증여자가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하고 ② 증여자가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지의 전부와 목초지 및 준농지 면적의 2/3 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2) 사후 관리

- 납세가 유예된 농지 중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사유라 함은 ① 특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② 특례농지와 관련되는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④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담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수증자가 특례 적용을 취소하는 경우, ⑥ 도시영농농지에 대해 생산녹지법의 규정에 의해 매입되는 경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특례농지 등이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⑦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준농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농업용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임.
 - 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된 세액과 유예기간에 따라 이자세가 부과됨.

마. 소규모 택지 등의 과세특례⁶⁷⁾

- 소규모 택지 등의 과세특례란, 유산 중 사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택지 등(토지 및 토지에 대한 권리)이 있는 경우에 그 택지 등의 평가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특례임.
 - 1983년도에 도입된 후 감액비율이나 대상면적이 수차례 확충되었음.
 - 이 중 사업용의 택지에 관한 특례가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동일생계의 친족이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택지를 상속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를 요건으로 400㎡까지의 면적에 대하여 토지의 상속세 평가액의 80%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함.

1) 적용 요건

가)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자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서 택지 등을 취득한 개인임.

나) 적용 대상 토지

- 적용 대상 택지는 개인이 상속이나 유증에 의해 취득한 택지임.
 -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 및 상속시 정산 과세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택지란 ① 상속개시 직전에 피상속인등⁶⁸⁾의 사업⁶⁹⁾용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택지, ② 건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제공되는 택지, ③ 재고자산

67) 일본국세청, 「相続した居住用や事業用の宅地等の価額の特例(小規模宅地等の特例)」,
<http://www.nta.go.jp/taxanswer/hyoka/4608.htm>
조세특별조치법 제69조의 4

68)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피상속인의 친족 포함.

69) 사업이라 함은 대부업 및 대가를 받고 비슷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준사업을 포함함.

및 이에 준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 등으로, 피상속인 등의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부분, ④ 특정 사업용, 특정 거주용,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및 대출 사업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함.

□ 특정 사업용 택지란, 상속 개시 직전에 있어 피상속인등의 사업용(부동산 대출업, 주차장업, 자전거 주차장업 및 준사업 제외)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으로,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을 말함.

① 피상속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친족(그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친족의 상속인을 포함)이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의 사이에 그 택지등 위에서 영위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업을 계승하여 신고기한까지 계속 그 택지 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②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의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을 그 친족이 취득했을 경우이며, 그 친족이 상속 개시시점부터 신고기한까지 계속 그 택지 등을 가지고 상속 개시 전부터 신고기한까지 계속 그 택지 등을 자기의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 특정 거주용 택지란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등의 거주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등(택지 등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로 거주용으로 제공하고 있던 하나의 택지 등으로 한정함)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임.

□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택지란,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친족, 그 외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지는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그 주식 또는 출자와 관련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는 법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임.

□ 대출 사업용 택지란, 상속 개시의 직전에 있어 피상속인등의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으로, ① 또는 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이 상속 또

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을 말함.

- ① 피상속인의 대출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 피상속인의 대출 사업을 계승하여 신고기한까지 계속 그 택지 등을 가지고 그 대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 ②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친족의 대출 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택지 등을 그 친족이 취득하여 상속 개시 시점부터 신고기한까지 계속 그 택지 등을 대출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3) 적용한도

- 선택한 택지에 대하여 이용 상황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한 면적을 400㎡~200㎡로 제한하고 있음.
 - 특정 사업용 택지 및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택지인 경우는 400㎡, 특정 거주용 택지인 경우는 240㎡, 대출 사업용 택지인 경우는 200㎡를 한도로 함.
- 평가액을 감액하는 비율도 택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특정 사업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 특정 거주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 특정 동족회사 사업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인 경우는 80%, 대출사업용 택지인 소규모 택지인 경우는 50% 감액함.

〈표 Ⅲ-15〉 소규모 택지 등의 과세특례 개정 추이

		1983~	1988~	1992~	1994~	1999~	2001~
사업용 택지 (신고기한까지 사업계속)	감액비율	40%	60%	70%	80%		
	적용대상면적	200㎡				330㎡	400㎡
거주용 택지 (신고기한까지 계속 거주)	감액비율	30%	50%	60%	80%		
	적용대상면적	200㎡					240㎡
상기 외의 사업용 및 거주용 주택	감액비율	사업용	40%	60%	70%	50%	
		거주용	30%	50%	60%		
	적용대상면적	200㎡					
부동산임대, 주차장용 택지등	감액비율	사업용	40%	60%	70%	50%	
		거주용	40%	0%	0%		
	적용대상면적	200㎡					

자료: 「相續稅의 課稅方式에 關する 一考察」, 稅務大學校, 宮脇義男.

IV.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 가업상속제도의 국제비교

가. 과세특례제도 개관

- 가업상속시 과세특례제도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공제제도’와 가업상속재산의 평가시 특혜를 제공하는 ‘평가특례제도’, 관련 세액 납부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납부특례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시 과세특례제도로 공제제도와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제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특히 농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아닌 별도의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부특례제도로는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와 관련하여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한편, 별도의 평가특례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련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미국은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가업상속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에 대한 공제,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 소유 집중기업에 대한 분할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사업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해 공제방식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영국의 경우 독일과 같이 기업자산에 대해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공제제도를 보다 세분화 하여 비상장주식, 농지, 소규모택지 등으로 나누어 납세유예 방식의 공제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표 IV-1〉 가업상속시 과세특례제도의 종류

구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공제 제도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 (QFOBI) 공제	○ 사업자산공제	○ 기업자산공제 ○ 농업자산공제	○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 증여세 납세유 예 ○ 농지에 대한 상속세및증여 세 납세유예 ○ 소규모택지등 에 대한 상속 세 과세가격 계산특례
평가 특례 제도	○ 경영권 프리미 엄 할증평가 배제	○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	N/A	N/A	N/A
납부 특례 제도	○ 연부연납특례	○ 소유집중기업 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	N/A	N/A	N/A

나. 공제제도

1) 적용대상 범위

가) 기업의 범위

- 기업상속공제 대상인 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통해 기업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하며, 과세유형장소의 경우 정책 목적상 공제대상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요건, 사업참여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기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으로 보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여부에 따라 비상장기업에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기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한편, 기업이 아닌 사업자산에 대해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경우 그 공제대상 사업을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업의 범위를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 요건을 통한 간접적인 제한 방식 또한 취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영국의 경우 별도의 규모제한 규정은 없으나, 업종제한 규정을 통해 공제대상 사업의 범위를 공제취지에 맞추어 제한하고 있음.

〈표 IV-2〉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의 범위

구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규모제한	○ 有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 無	○ 無	○ 無	○ 有 - 비상장중소기업
업종제한	○ 有 - 과세유흥장소 제외 - 음식점업은 포함	○ 無	○ 無	○ 有 -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 종마사육자, 화가, 조각가, 음악가, 작가 제외	○ 有 - 풍속영업회사 제외 - 특정 자산보유형 및 자산운용형 회사 제외
피상속인 요건을 통한 제한	○ 有 - 소유 요건 (지분을 제한) - 사업참여 요건 (기간제한) - 대표이사 재직 요건(기간 제한)	○ 有 - 소유 요건(기간, 지분을 제한) - 사업참여 요건 (기간제한) - 거주자 요건	○ 無	○ 有 - 소유 요건 (기간 제한)	○ 有 - 소유 요건 (지분을 제한) - 사업참여요건

나)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음.
 -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가치에 비사업용 자산가치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전액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가족사업지분 또는 사업자산을 가업상속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수동자산 또는 관리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에서는 가족사업 지분 중 수동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관리자산 자체를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자산이 상속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사업공제를 전액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미국 및 독일과는 달리 수동자산 등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구비하고 있지 않음.

〈표 IV-3〉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1) 가업상속공제 ○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2) 영농상속공제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 가족사업 지분 ○ 수동자산 제외 - 초과보유 현금·유가증권 - 자본취득에 대한 적립금 - 배당, 임대료, 로열티, 이자 연금 소득 창출자산 - 신탁 및 파트너십 지분 -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 사업자산 ○ 관리자산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적용 불가 - 임대자산 - 법인의 주식 - 투자자산 - 유가증권 및 유사 청구권 - 예술품, 과학수집품, 도서, 기록보관소, 동전, 귀금속, 보석류 등	(1) 기업자산공제 - 기업지분, 비상장회사주식, 상장회사주식, 사업에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 기계, 설비자산, 수익자권한이 있는 신탁에 출연된 토지, 건물, 기계, 설비자산 (2) 농업자산공제 - 농업용 초지, 목초지, 삼림지, 가축 및 어류의 사육에 사용되는 건물, 농업용 토지에 딸려있는 농가주택	(1)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유예 - 비상장주식 (2) 농지상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유예 - 농지 (3) 소규모 택지등의 과세특례 - 사업용 토지 및 토지에 대한 권리

2) 기업상속공제 혜택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상속공제에 대해 공제율로는 40%를 적용하고 있고 한도금액으로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60억, 80억, 100억원을 적용하고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개별 국가는 각각 상속세에 대한 정책기조, 전반적인 상속세 체계, 기업상속공제 범위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IV-4〉 기업상속공제제도: 기업상속공제 혜택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1) 기업상속공제 ○ 공제금액 =Max[기업상속재산가액×40%, 2억원 ¹⁾ ○ 공제한도 - 60억, 80억, 100억원 ²⁾ (2) 영농상속공제 ○ 공제금액 =Min[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 공제금액 =Min[가족사업지분, \$675,000] ○ 공제한도 - 기업상속공제와 유산세기본공제 합계액은 \$1,300,000 이하여야 함	공제금액 - 상속재산 85% 공제 또는 상속재산 전액 과세면제 ○ 공제한도 - 無	(1) 사업자상공제 ○ 공제율 - 기업지분, 비상장주식: 100% - 상장주식: 50% - 토지·건물·기계·설비등: 50% ○ 공제한도 - 無 (2) 농업자산공제 ○ 공제율 - 농업용 토지, 12개월 이상 임대 한 농지, 야생동물서식지에 사용되는 농지 및 건축물: 100% - 농업용자산: 50% ○ 공제한도 - 無	(1)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납세유예 ○ 공제금액 -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 공제한도 - 상속취득 주식 및 상속 전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2/3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2/3 - 상속 전 보유주식 (2) 농지상속에 대한 납세유예 - 상속 농지 전액 (3) 소규모 택지 등의 과세특례 - 사업용 택지: 400㎡까지 80% 감액 - 부동산임대, 주차장용 택지: 200㎡까지 50% 감액

주: 1) 기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기업상속재산가액.
 2) 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가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억원을 한도로 하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80억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한도로 적용함.

- 미국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로 \$675,000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유산세 기본공제금액과 합하여 \$1,300,000 이하여야 하므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임.
-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상속세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여 85%와 100%의 공제율을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제대상 사업의 범위를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한하는 대신 공제율로는 50% 및 100%를 규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경우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상속 후 상속인의 지분율이 66.67%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주식가치의 2/3에서 상속 전 보유주식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3)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 관련 요건, 상속인 관련 요건, 상속재산 관련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피상속인 관련 요건은 소유 요건과 사업참여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이를 운영하고 있음.
 - 소유 요건으로 주요국에서는 지분율 또는 소유기간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
 - 지분율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으로 모두 50%를 규정하고 있음.
 - 소유기간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으로 미국의 경우 8년 중 5년 이상을, 영국의 경우 2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참여 요건으로는 주요국에서는 사업 참여기간 또는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
 - 사업참여 기간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을, 미국의 경우 8년 중 5년 이상을 사업에 참

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 관련 요건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 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인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전에도 가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상속개시 시점에는 18세 이상이라는 연령요건을 두고 있음.
- 반면, 주요국에서는 상속인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전 기간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특정 요건을 상속인 관련 요건으로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상속인에게 사후관리 관련 환수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사업의 계속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후 관리 요건과 일치함.
 - 일본의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및 소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상속재산 관련 요건의 경우 미국의 경우 가족소유사업 지분이 총유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의 경우 수동자산이 전체 상속사업자산의 50% 또는 10%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산공제를 전액 배제하고 있음.

〈표 IV-5〉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구분	우리나라 ¹⁾	미국	독일	영국 ²⁾	일본 ³⁾
피상속인 관련	(1)소유 요건 ○ 지분율: 50% 이상(상장법인은 40% 이상) (2)사업참여 요건 ○ 기간: 사망 전 10년 이상 ○ 대표이사재직: 사업참여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1)소유 요건 ○ 기간: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5년 이상 ○ 지분율: 50% 이상(한 가족 사업의 경우) (2)사업참여 요건 ○ 기간: 사망 전 8년 중 5년 이상 ○ 중대하게 참여 (3)거주자 요건 ○ 사망 당시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N/A	(1) 소유 요건 ○ 기간: 상속 직전에 피상속인이 2년간 소유	(1)소유 요건 ○ 지분율: 50% 초과 & 후계자 이외의 자 중 가장 많은 지분 보유 (2)사업참여 요건 ○ 승계한 회사의 대표자
상속인 관련	(1)사업의 계속성 요건 ○ 가업종사 요건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 종사 ○ 임원취임 요건 : 상속인 1인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2)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1)사후 관리 서명 요건 ○ 사후 관리 관련 환수 계약에 서명	(1)사업의 계속성 요건 ○ (85%공제)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계속유지 ○ (전액면제)7년동안 계속유지 (2)고용유지 요건 ○ (85%공제)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은 승계 사업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 ○ (전액면제)7년간 급여총액이 700% 이상	N/A	(1)사업참여 요건 ○ 대표자취임 요건 : 상속개시 5개월 이내에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 (2)소유 요건 ○ 50% 초과 보유 & 가장 많은 의결권 보유 (3)기타 요건 ○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 재산 관련	N/A	(1)유산비율 요건 ○ 가족소유사업지분은 총유산가액의 50%를 초과 (2)사업장소 요건 ○ 주된 사업장소는 미국에 소재	(1)사업자산 비율 요건 ○ (85%공제)수동자산은 전체 상속사업자산의 50% 이하 ○ (전액면제)수동자산은 10% 이하	N/A	N/A

주: 1)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함.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과 관련해서는 (1)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외에 (2)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과 관련해서는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동일한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할 것과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2) 또는 영농·영어 및 임업 후계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사업자산공제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함.
3)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유예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함.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의 경우 수증자 요건에 20세 이상일 것과 임원 등에 취임하여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의 요건이 추가됨.

4) 사후 관리 요건

-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가업상속시 공제혜택을 제공하며 별도의 사후 관리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시점에 제공한 공제혜택을 환수하고 있음.
- 사후 관리 기간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을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독일의 경우 보다 완화하여 5년(또는 7년)을 사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상속인의 사업참여 요건이나 고용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5년을 사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분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 사후 관리 하고 있음.
- 사후 관리 요건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유지 요건, 가업종사 요건 및 지분유지 요건을 두고 있음.
 - 사업유지 요건은 가업상속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독일 및 미국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사업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자본이득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재투자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가업종사 요건의 경우 미국 및 일본에서 역시 규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가업승계가 아닌 사업승계에 대해 폭넓게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 및 영국의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지분유지 요건은 가업상속 지분을 유지하여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대해 피상속인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 및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요건을 두고 있음.
- 한편, 사후 관리 요건 중 독일과 일본의 고용유지 요건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는 요건임
 - 이는 사업승계에 대해 세제지원 취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요건으로 판단됨.

〈표 IV-6〉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 관리 요건

우리나라 ¹⁾	미국	독일	영국	일본 ²⁾
(1) 사업유지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가업 상속자산의 2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2) 가업종사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가업에 종사 (3) 지분유지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	(1) 가업종사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할 것 (2) 지분유지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가족사업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 (3) 거주자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미국시민권 유지 (4) 사업장소 요건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사업장소를 미국으로 할 것	(1) 사업유지 요건 ○ 사업승계 후 5년 (또는 7년) 동안 사업을 중단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것 (2) 고용유지 요건 ○ 사업승계 후 5년 (또는 7년)간 급여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N/A	(1) 사업참여 요건 ○ 5년간 인정받은 대표자 지위를 계속유지 (2) 고용유지 요건 ○ 상시종업원 수의 80% 이상 유지 (3) 지분유지 요건 ○ 대상 주식을 계속 보유

주: 1)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사후 관리 요건에 해당함.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사후 관리 요건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1)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계속 유지할 것, (2) 영농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유예에 관한 요건임.

다. 평가특례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시 특혜를 제공하는 평가특례제도로 가업상속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농장 및 소유집중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하여 유산세를 계산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표 IV-7〉 가업상속시 평가특례제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p>○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p> <p>※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제도 :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을 50% 이하: 20%(중소기업 10%) - 지분을 50% 초과: 30%(중소기업 15%) 	<p>○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p> <p>(1) 대상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 소유집중 기업의 부동산 <p>(2) 평가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시장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평가하여 유산세 계산 - 단, 공정가치 평가액과 차이는 \$1,000,000 이하여야 함 <p>(3) 특례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의 가족 - 피상속인 요건 : 거주자일 것 : 사망 시점에 사업용으로 사용요건 : 사망 전 8년 중 5년 동안 소유 및 사용 : 사망 전 8년 중 5년 동안 사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 - 자산 요건 : 미국소재 : 요건을 갖춘 농장 등은 총유산조정가액의 25% 이상 <p>(4) 사후관리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내에 대상자산을 처분 또는 사용 중단한 경우 추가유산세 부담 	<p>N/A</p>

라. 납부특례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납부특례제도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와 관련하여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부연납 기간으로 5년이 아닌 12년을 적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소유집중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상속세액을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표 IV-8〉 가업상속시 납부특례제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p>○ 연부연납 특례</p> <p>(1) 특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상속재산 : 5년 기간적용 - 가업상속재산 : 2년 유예 & 5년 기간 적용 - 50% 이상 가업상속재산 : 3년 유예 & 12년 기간 적용 <p>(2) 특례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단,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p>(3) 사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 및 변경사유 :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변경 등 -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p>○ 소유집중기업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p> <p>(1) 특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분할납부 횟수: 10회 - 단, 7회부터는 이자상당액(2%, 45%)을 부담해야 함 <p>(2) 특례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집중 기업의 지분은 조정총유산가액의 35%를 초과해야 함 - 35% 비율계산시에는 수동자산은 제외 <p>(3) 사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사유 :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미납부한 경우 - 지분을 처분한 경우 또는 지분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자산을 인출한 경우 	<p>N/A</p>

2.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가업상속제도의 기본방향

□ 사업이 아버지 세대의 사망으로 아들 세대에게 이전되는 경우 아들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한 자산을 수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 필요

할 것임.

- 한편, 아버지 세대의 사망에 따른 기업의 상속 사건으로 인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해당 사업자산의 처분 또는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기업상속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여러 형태의 기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에서는 최근 기업상속에 대한 공제혜택을 더욱 확대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피상속인 요건에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축소하고 공제한도액은 인상하는 등 기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음.
 - 독일에서는 상속세개혁법 및 경제성장촉진법을 통해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일본의 경우 2009년 상속세 개정을 통해 기업상속 공제대상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한 바 있으며, 독일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상속 공제혜택을 무한정 확대할 경우 기타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상속 공제혜택의 적정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이하 '나. 주요 항목별 개선방향'에서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주요 항목을 나누고 각각에 대해 주요국의 사

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주요 항목별 개선방향

1) 가업의 범위 조정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의 범위는 가업상속에 대해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
 -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개인 재산가의 부의 이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의 사업에 대해 그 계속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승계하는 사업이 해당 개인 사업가만의 전문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의 활동이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이를 피상속인이 주된 소유자 및 경영자로서 운영했는지 여부가 가업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임.
-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가업의 범위 규정을 보면 가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해당 개인 사업가가 전문성을 갖춰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는 가업의 범위를 주로 규모를 통해 제한하고 있고 해당 가업을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요소가 없음.
 - 따라서 가업의 범위 규정이 다소 형식적이고 가업상속공제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가업상속공제가 개인 재산가의 부의 이전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계속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지되도록 가업의 범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영국과 같이 가업의 범위 규정에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요건 등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임.

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명확화

-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역시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
 -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만이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피상속인이 순전히 자신의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에 대해서까지 상속세 공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을 보면, 주요국과는 달리 그 범위를 개인 기업과 법인가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자산을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구비하지 않고 있음.
 -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동 자산 등을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법인가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자산 중 수동자산 역시 가업상속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을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제외되는 자산은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순전히 자신의 부를 축적할 용도로 보유하는 것으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동자

산, 관리자산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법인기업 역시 기업의 모든 주식가치를 가업상속재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기여하는 자산 부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함.
 - 이때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는 개인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전체 가업상속재산 중 수동자산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전액 배제하는 것도 재산가의 단순한 부의 이전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3) 가업상속공제 혜택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가업상속시 사업 및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면서 기타 상속의 경우와 과세형평 및 재정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상속세 관련 정책기조, 전반적인 상속세 체계를 비롯하여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차이가 있어 국가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행 40%의 공제율은 독일의 85%, 100%, 영국의 50%, 100%, 일본의 100%와 비교하여 볼 때 낮고, 피상속인의 사업 경영기간에 따른 60억, 80억, 100억원의 공제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엄격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주요 국가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속세 체계 안에서 설계된 것으로 이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될 것임.
- 독일의 경우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율을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35%에서 85%, 100%로 확대한 배경을 보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 또한 독일에서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우리나라의 50%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정책기조 및 공제

을 확대가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영국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혜택을 주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공제대상이 비교적 좁게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혜택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서 조사한 주요국의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상속세의 전반적인 정책기조,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상속세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본 연구의 연구주제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초점을 두어 전문경영인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업상속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제혜택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 가업상속공제 취지를 반영하여 공제혜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앞서 ‘가업의 범위 조정’ 항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업의 범위를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해당 가업에 대해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어떻게 정할지 여부는 해당 전문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소기업 활성화, 고용안정과 같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경영인의 납세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임.

4) 가업상속공제 요건(사전 요건) 정비

-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각각 가업상속의 취지에 적합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함.
 - 가업상속 공제 요건은 기업의 유지 및 관련 고용의 유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를 살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가)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의 경우 앞서 주된 소유자 및 경영자로서 해당 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는지 여부가 그 적정 지위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임.
 - 현행 규정을 보면, 주된 소유자임을 판별하는 요소로 지분율을 두고 있으며, 주된 경영자인지를 판별하는 요소로 일정 기간 이상 사업참여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두고 있음.

- 그런데 현행 규정 중 주된 경영자인지를 판별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사업참여 및 대표이사 재직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왜냐하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미국의 사례를 보면, 피상속인이 주된 경영자인지 여부를 그 직급명칭이 아닌 사업 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음.
 -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고용, 경영, 재무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및 물리적인 근로 여부 등으로 판별하고 있음.
 - 따라서 이사 또는 파트너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은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피상속인 요건이 가업상속 공제혜택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된 경영자로서 해당 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대표이사 재직요건 대신 미국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의 경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의 취지에 적합한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속받은 후에는 일정 사후 관리 기간 동안 그 취지에 적합한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보면,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으로 상속시점에 상속인이 승계받은 사업활동을 영위할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고 있음.
 - 사업활동을 영위할만한 능력의 측정기준으로는 과거 2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했는지 여부 및 연령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주요국에서는 가업상속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사업활동 영위능력을 측정하는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요구하는 바가 없음.
 - 다만, 영국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특정 요건을 상속인 관련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대개 사후 관리 요건과 관련된 것임.
 - 미국의 경우 상속인에게 사후 관리 관련 환수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사업의 계속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후 관리 요건과 일치함.
 - 일본의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및 소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가업상속 전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은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상속인 관련 요건은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 요건을 통해서보다는 사후 요건을 통해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가업을 영위하여 가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한 경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중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은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은 피상속인의 요건에서와 같이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5) 사후 관리 요건 정비

-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의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후 관리 요건으로 다양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음.
- 우리의 현행 규정을 검토해 보면, 첫째 사후 관리 기간과 관련하여 10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일부 긴 측면도 있으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10년의 사후 관리 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5년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경우 지분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사망 시점까지로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참여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의 경우 5년 동안만을 사후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하여 경영 노하우, 특화된 전문기술 등에 기반한 가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사업자산유지 요건의 경우 독일 및 미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산이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합리적인 처분사유에 한해서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리고 합리적인 처분사유로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상속공제 취지인 사업의 계속성 달성을 위해 오히려 권장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임.
 -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사업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업상속 공제혜택을 환수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재고자산 또는 사업장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사업지분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후 관리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사업용 자산에 재투자한 경우 역시 합리적인 처분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나라의 현행 사후 관리 규정에는 없는 요건이나 독일과 일본의 고용유지 요건의 경우 기업상속의 취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그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독일과 일본의 경우 사후 관리 기간 동안 각각 급여총액 및 상시종업원 수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기업상속 공제를 위한 사후 관리 요건으로 두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고용유지 측면에서 기업상속공제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사후 관리 요건으로 고용유지 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사후 관리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사업의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수액을 차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V.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4개 국가의 가업상속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업상속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여러 형태의 가업상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요건을 갖춘 가족사업지분에 대한 공제, 가족농장 등에 대한 평가특례, 소유집중기업에 대한 분할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과 영국의 경우 가업상속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해 공제방식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제제도를 보다 세분화 하여 비상장주식, 농지, 소규모 택지 등으로 나누어 납세유예 방식의 공제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주요국에서는 가업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공제혜택, 공제 요건, 사후 관리 요건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가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별도의 규모나 업종 제한 규정이 없으나 영국의 경우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가장 엄격하게 규모와 업종을 통해 제한하고 있음.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혜택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하나 독일, 영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근 세법개정 등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음.

- 공제 요건의 경우 피상속인 요건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소유 요건과 사업참여 요건 등을 두고 있음.
 - 상속인 요건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 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임.
 - 사후 관리 요건의 경우 독일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용유지 요건을 두고 있음.
 - 또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공제혜택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조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가업의 범위 관련하여 영국의 규정을 참조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히 재산가의 부의 이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업가의 사업에 대해 그 계속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가가 전문성을 갖춰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판정요소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반면, 영국에서는 가업의 범위 규정에 ‘전문적이거나 천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 둘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원화 하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개인기업의 경우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역시 개인기업과 같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기여하는 자산만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함.

- 셋째,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가업상속시 사업 및 고용의 계속성을 지원하되, 기타 상속의 경우와 과세형평 문제 및 재정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함.
 -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해당 전문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소기업 활성화, 고용안정과 같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경영인의 납세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함.

- 넷째,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이를 가업상속공제 운영취지인 기업의 유지 및 관련 고용의 유지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
 - 피상속인 요건에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미국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요건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상속인 관련 요건은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요건을 통해서보다는 사후 요건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사후 관리 요건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정비해야 함.
 - 독일과 일본의 고용유지 요건의 경우 가업상속의 취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업자산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처분사유에 독일의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세제혜택을 100%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사업유지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_____, 「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보도참고자료, 2010. 2. 19.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9.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중소기업청,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2008.
- 중소기업청, 『2009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 岡田 悟, 「中小企業の事業承継問題」, 2007.
- 宮脇義男, 「相續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一考察」, 税務大学校論叢 제57호, 2008. 6.
- 井上考二, 「小企業において事業承継の現況と課題」, 政策公庫論集 第1号, 2008. 11.
- LexisNexis, *Tolly's Inheritance Tax* 2008-09, 2008.
- <http://www.samili.com>
- <http://www.ibfd.org>
- <http://www.irs.gov>
- <http://uscode.house.gov>
- http://bundesrecht.juris.de/erbstg_1974
- <http://www.hmrc.gov.uk>
- <http://www.nta.go.jp>

세법연구 10-03

주요국의 기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2010년 8월 23일 인쇄

2010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김진·송은주·정희선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1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